대한민국정부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관보

제14962호 2001. 11. 27. (화)

선람	기 관 의 장

안 내 문

각급기관 / 독자여러분

2000년10월 1 일부터 오늘의 관보전문(全文)을 아래주소로 서비스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짜변경시점 : 09 : 00)

접속방법 → 〈주소〉 http : //gwanbo.korea.go.kr
→ 〈메뉴〉 전자관보·····click
→ 관보안내문 〈오늘의 관보〉 〈내일의 관보〉

○접속관련 기술적인 문제해결은 02)3703-3383으로 문의

※관보의 법적우선효력은 종이관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보운영체제 공개

〈2000년10월 1 일부터 3차 검증〉

〈접수마감〉 평 일 14 : 00 / 토요일 11 : 00 ⊙근거법규 : 관보편찬예규 제13조 (고시 · 공고일자)

D-3일 접수통제 · 편집 → D-2일 교정 · 인쇄 → D-1일 제책 · 수송 → D일 보급 · 배포 → ※게재일자

※공휴일은 발행하지 않으므로 **게재일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게재의뢰공문(시행문) 1부 →FAX : 3703-5507 ------ 24시간 365일 접수

제목우측에 고시 · 공고번호를 반드시 기재요망

관보게재근거법규를 명시-예시 : …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조제○항 근거

※현행법령(대한민국법령집)→384個(2001. 6. 현재)

게재문안(첨부물) 1부 →E-mail : gwanbo@mogaha.go.kr ---------

□방문 · 우편접수는 받지않음. 단, 법령, 수입인지 첨부건, 특수문건만 당분간 제외

게재 · 접수 확인방법 ○당일 접수건 : 평 일 16 : 00이후 / 토요일 12 : 00이후 } 보낸사람 PC에서 수신 확인

※문서접수 check는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위 지정시간 전이라도 수시로

○D-1일 접수건 : gwanbo.korea.go.kr→전자관보→내일의 관보→익일 가편집목록으로 목차확인

○D-2일 접수건 : gwanbo.korea.go.kr→전자관보→내일의 관보→익익일 가편집목록으로 목차확인

○D-3일 접수건 : gwanbo.korea.go.kr→전자관보→오늘의 관보 전문확인

□특수문건 게재협의 : 3703-4348~49

관보이용기관

관보운영체제는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편리한 날짜에 공포 · 고시 · 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2000년 5 월 1 일부터 투명하게 열어 놓았습니다. 공개된 관보운영체제에 따라 게재원고의 전산 · 전자접수 방법, 접수확인 방법을 스스로 연찬하여 관보의 전산 · 정보화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제공

회람								

발행 **행정자치부** (편집 ☎ 720-4331 보급 ☎ 727-0611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110-760)

1201-4A 1995. 10. 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8.8g/㎡

【부　　령】

○재정경제부령제228호(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중개정령) ……5
○건설교통부령제303호(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중개정령) ……5

【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01-20호(사방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6
○산림청공고제2001-21호(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6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34호(액화석유가스안전대책의효율적추진을 위한용기관리및소비자보호에관한기준) ……7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35호(전력신기술지정)……10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09호(횡성다목적댐기본계획변경)……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300호(하천점용허가)……1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81호(하천점용변경허가)……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77호(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78호(한국산업규격확인)……13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80호(한국산업규격제 · 개정)……13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81호(한국산업규격확인)……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14호(항로표지신설)……1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78호(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15
○전파연구소고시제2001-373호(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15
○전북체신청고시제2001-14호(무선국폐지) ……15
○경북체신청고시제2001-41호(우편취급소위탁계약해지및설치) ……16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58호(법인설립인가)……16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67호(기부금품모집허가)……16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48호(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17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22호(유로도로통행료의수납)……17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23호 · 제2001-324호(고속국도사용개시) ……17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24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18
○중소기업청공고제2001-157호(싱글PPM품질인증기업) ……18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1-82호(수질분야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19
○낙동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86호(방지시설업등록취소) ……19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68호(수질방지시설업신규등록) ……19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69호(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19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34호(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260호(측량업양도 · 양수)……20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1-5호(관인등록) ……20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고제2001-1호(민원행정서비스헌장) ……20
○충청체신청공고제2001-124호(정보통신공사업폐업)……23
○충청체신청공고제2001-125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23
○충청체신청공고제2001-126호(정보통신공사업양도및등록)……23
○김해우체국공고제2001-6호(관인등록) ……23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86호(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24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384호(공릉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및개발계획변경승인) ……26
○부산광역시고시제2001-303호(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 ……30
○인천광역시고시제2001-218호(인천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 ……30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1-21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32
○(서울)중랑구고시제2001-90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 ……33
○(부산)기장군고시제2001-541호(부산도시계획시설지형도면작성) ……34
○양구군고시제2001-23호(공공시설입지승인) ……34
○평창군고시제2001-400호(미탄취락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35
○평창군고시제2001-401호(평촌취락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37
○평창군고시제2001-402호(면온취락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39
○평창군고시제2001-403호(무이화암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41
○아산시고시제2001-126호(배방도시계획변경에따른지형도면승인) ……44
○부안군고시제2001-259호(부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44
○거제시고시제2001-44호(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재수립) ……44
○김해시고시제2001-69호(도시계획시설지형도면승인) ……46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47호(일반건설업등록공고) ……46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51호(서울신내지구택지개발사업완료공고) ……46
○부산광역시공고제2001-535호(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49
○인천광역시공고제2001-492호(일반건설업등록말소공고) ……49
○광주광역시공고제2001-503호(사단법인설립허가공고) ……49
○대전광역시공고제2001-428호(일반건설업등록공고) ……49
○충청남도공고제2001-304호(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공고) ……49
○경상북도공고제2001-308호(칠곡중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 …49
○경상남도공고제2001-438호(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정공고) ……50
○(서울)동작구공고제2001-366호(전문건설업등록반납공고) ……50
○(부산)금정구공고제2001-683호(무주부동산공고) ……50
○(부산)동구공고제2001-206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50
○(인천)연수구공고제2001-163호(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51
○(인천)중구공고제2001-387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51
○(대전)서구공고제2001-824호(공시송달공고) ……52
○(울산)남구공고제2001-461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52
○부천시공고제2001-503호 · 제2001-504호(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53
○평창군공고제2001-404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53
○청주시공고제2001-431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53
○부여군공고제2001-286호(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 ……53
○김제시공고제2001-360호(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54
○고창군공고제2001-270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56
○구미시공고제2001-492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56
○군위군공고제2001-172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56
○진주시공고제2001-675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57

◯합천군공고제2001-432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57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1-23호(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57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1-31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57
◯경기도구리소방서공고제2001-9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57

【인 사】

◯인사발령 ……58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실지조사출석통지(광업등록사무소) ……58
◯결 정(창원지방법원) ……58
◯공시최고(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청) ……58
◯심 판(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59
◯공 고(수원지방법원) ……60
◯(주)모나리자관계인집회기일공고(서울지방법원)……60
◯파산선고및파산폐지결정공고(인천지방법원) ……60
◯채권조사의특별기일공고(대전지방법원) ……61
◯채권조사의특별기일및채권자집회소집공고(대전지방법원) ……61
◯동우종합건설주식회사화의인가공고(광주지방법원) ……61
◯파산선고공고(전주지방법원) ……62
◯포항중앙신용협동조합파산선고공고(대구지방법원) ……63
◯채권자집회소집공고(창원지방법원) ……63
◯배당공고 ……63

부 령

⊙재정경제부령 제228호

⊙건설교통부령 제303호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11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건설교통부장관 인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중 개정령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 및 전직국무총리”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전직헌법재판소장 및 전직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종전에는 공항에서의 귀빈예우 대상이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대우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장을 대법원장 다음의 순으로 변경하고, 전직헌법재판소장을 귀빈예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전직대법원장 다음에 나열

◇주요내용

가. 공항 귀빈실의 사용대상자인 헌법재판소장을 대법원장 다음의 순으로 변경하고, 전직 헌법재판소장을 귀빈예우 대상에 포함시켜 전직대법원장 다음에 나열(제4조) 〈재정경제부 제공, 건설교통부 제공〉

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01-20호

사방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의 개정(법률 제6489호, 2001. 7.24.)으로 산림청장의 일부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관련 업무의 조정과 사방지의 목적달성 해제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 야계사방지의 목적달성기준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방사업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사방사업 시행·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일부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업무의 권한자를 조정함.

나. 사방지의 목적달성 해제기간을 사방사업 시행후 15년이 경과된 사방지를 대상으로 지정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을 10년(5년단축)으로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 야계사방지의 목적달성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여 사방지의 지정해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 전화 : (042) 481-4185, 전송(042) 472-32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 : //www.fo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산림청공고제2001-21호

사방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의 개정(법률 제6489호, 2001.7.24)으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및 사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대상지선정, 시공의 우선순위, 설계·시공방법 등을 규정하여 견실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방시설 관리내용에 사방시설의 유지보수, 산불방지 및 병해충방제 업무 등을 규정하여 사방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 전화 : (042) 481-4185, 전송(042) 472-32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 : //www.fo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34호

액화석유가스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대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 용기관리및소비자보호에관한기준

제1장 총 칙

제1-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안전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칙 제59조 및 별표 17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제2-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59조 및 별표 17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2조 (표시 위치 및 내용) ①충전가스명, 가스공급자의 상호 등은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한다.

②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면(이하 "용기앞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전가스명(LPG)
2. 충전기한

③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의 뒷면(이하 "용기뒷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관청의 명칭
2. 가스공급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다만, 2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상호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용기의 안전관리 업무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호

④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 (표시색상 및 규격등) ①용기앞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②용기뒷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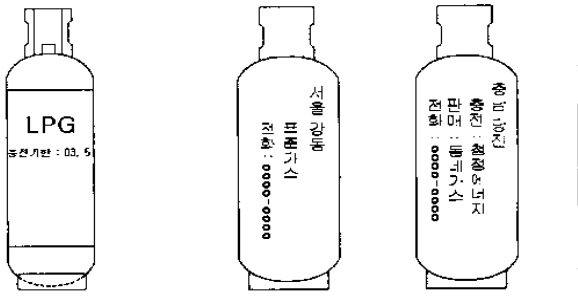
③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로 한다.

④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은 가로·세로 7cm, 충전기한은 가로·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⑤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가로·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⑥문자의 행간 간격은 3cm이상으로 한다.

<용기표시의 예>



※ 용기의 안전관리업무중 일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 용기의 안전관리업무중 일부를 위탁한 경우

<앞 면> <뒷 면>

제2-4조 (공용상호의 표시) 규칙 별표 17 제2호마목(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내 가스공급자가 공용상호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허가관청은 관할구역내의 모든 판매사업자가 단일한 공용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용기관리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용기관리 및 유통체계의 전산화와 전산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위하여 용기관리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액화석유가스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준

제3-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59조 및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안전시설투자 및 서비스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용기가스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 용기가스소비자에 대한 안전서비스실태조사 및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조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①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시행이후 불합리한 가스가격의 인상과 담합에 의한 가스 가격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는 각 허가구역 별로 다음 각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매주 1회이상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원활한 판매가격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②유통단계별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매주 용기충전사업소 5개소 이상(시·도별 충전사업소가 5개소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충전사업소)을 대상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의 경우에는 각 시·군·구별로 매주 각 3개소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시·군·구별 판매사업소가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판매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③해당지역의 표본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자
2.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자
3.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을 불합리하게 인상·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자

④피조사대상자는 충전사업소 및 판매사업소의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안전관리자 또는 종업원으로 하며, 피조사대상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가격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조사와는 별도로 각 시·군·구와 소비자 단체는 제1항각호의 판매가격을 매월 1회이상 조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조사를 할 경우 각 시·군·구와 소비자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각 시·군·구에 소재하는 모든 충전업소와 판매업소의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 ①가스공급자의 공급설비 철거에 따른 시가상당액 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급설비 판매가격을 매월 1회 이상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원활한 판매가격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용기
2. 압력조정기
3. 자동절체기
4. 가스계량기
5. 기화장치

②표본조사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제조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모든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매업체가 3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판매량이 가장 많고 판매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도매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③피조사대상자는 용기제조사업소 및 도매업체의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안전관리자 또는 종업원으로 하며, 피조사대상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가격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안전서비스 실태조사) ①공사는 안전관리종합평가 항목에 가스공급자의 공급자의무 준수여부 및 안전시설투자 등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공사, 각 시·군·구 및 소비자단체는 가스공급

자의 안전시설 투자 및 서비스 개선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비자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조사결과의 공표) ①공사는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공급설비판매가격 및 안전서비스실태 조사결과를 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②각 시·군·구와 소비자단체는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과 안전서비스 실태조사결과를 시·군·구 및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할 수 있다.

제3-6조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설치·운영) ①용기가스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공사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허가구역내에 설치하는 각 신고센터는 필요시 업무협조, 정보교환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④소비자 불만신고를 최초 접수한 신고센터 운영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며, 불만신고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공사는 소비자의 신고내용 및 권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이관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행정관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 (허가관청의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액화석유가스 및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와 안전서비스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공급계약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가스공급자의 안전시설투자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공급계약 체결현황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 (안전공급계약) ①가스공급자는 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한 경우에도 다른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계약의 해지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다.

②산업자원부고시 제2001-80호(2001. 7.1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안전공급계약은 별표 17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안전공급계약으로 본다. 다만, 규칙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기간안에 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하고 안전공급계약서를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3-9조 (소비설비의 안전점검) 가스공급자는 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한 소비설비안전점표를 교부하기 전에 용기가스소비자의 소비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설비안전점검표에 기록한 후 교부한다.

제3-10조 (공급설비의 철거 및 처분) 공사는 규칙 별표 17 제2호라목(4)의 규정에 의한 공급설비의 철거·처분업무를 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1조 (소요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액화석유가스 및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 안전서비스실태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나 소비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80호(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 체결등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9호(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제2장제6절제1관(용기의 표시방법)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35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 :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전공법

○지정번호 : 제10호

○신기술개발자

-회사명 : 대원전기(주)(전화 : 043-533-2723)

-대표자 : 권용학, 권세원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기술개요

-무정전 배전공사시 바이패스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하여 기존 활선전선을 이선함으로써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신·구 전선을 바이패스시켜 순차적인 전기의 분리·연결에 의한 간단한 공정으로 무정전 배전공사를 시행하는 직접송전공법

○신기술범위

-전선이선기구 및 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가공배전공사의 시공법

-기구 및 장치

·매직암, 핀장주용 전선이선기구, 완금연장용 보조암, LP애자 상부절연연선로라, 보조완금 고정장치, 전선용간격유지구

○보호내용(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참조)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본건 신기술이 현장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보호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02-2274-1662)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09호

건설부공고 제63호(1991. 6. 1.)로 공고한 바 있는 횡성다목적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당 초	변 경
1. 건설의 목적	1. (변경없음)
가. 원주시를 비롯한 섬강 중, 하류 지역의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	
나. 홍수조절에 의한 섬강 중,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2. 위치 및 명칭	1. (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나. 수 계 : 섬강상류 계천	
다. 명 칭 : 횡성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3. 규모 및 형식
가. 댐	가. (변경없음)

당 초	변 경
○유역면적 : 209㎢	
○댐높이 : 48.5m	
○연평균유입량 : 176백만㎥	
○댐길이 : 205m	
○댐형식 : 중앙차수벽형 석괴댐	
○댐체적 : 675천㎥	
나. 여수로	나. (변경없음)
○형식 :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문비규모 : 11m×13.95m×2문	
다. 가배수터널	다. (변경없음)
○No.1 : D=7.5m, L=236.9m	
○No.1 : D=4.5m, L=382.4m	
라. 발전시설용량 : 700㎾×2대=1,400㎾	라. 발전시설용량 : 500㎾×2대=1,000㎾
4. 저수량, 취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댐	가. 댐
○총저수용량 : 86.9백만㎥	○총저수용량 (변경없음)
○계획홍수위 : EL. 180m	○계획홍수위 (변경없음)
○유효저수용량 : 73.4백만㎥	○유효저수용량 (변경없음)
○상시만수위 : EL. 178.2m	○상시만수위 (변경없음)
○저수지면적 : 6.01㎢	○저수지면적 : 5.82㎢(EL. 180.0m)
○저수위 : EL. 160.0m	○저수위 (변경없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량 : 9.5백만㎥	○홍수조절량(변경없음)
○농업용수공급량 : 7.8백만㎥/년	○농업용수공급량 : 15.8백만㎥/년
○생활및공업용수공급량 : 80.7백만㎥/년	○생활및공업용수공급량 : 72.3백만㎥/년
○발전량 : 10.4Gwh/년	○발전량 : 5.6Gwh/년
○하천유지용수공급량 : 23.1백만㎥/년	○하천유지용수공급량 : 31.4백만㎥/년
5.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 : 국가(건설부장관)	5.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공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84,399백만원	가. 건설비용 : 212,099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 특정다목적댐법 제14조에 의거 국가 선행투자	나. 건설비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공사기간 : 1991년 ~ 1996년(6년)	7. 댐건설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1991년~2003년(13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300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98-5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마포대교 북단
 ○면 적 : 0.3×37=1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상수도 유지관리용 표석 매설
 ○개 요 : 표석 37개(550×550×600)
5. 점용기간 : 영구(공사기간 2001.12.15까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81호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공작물설치)을 변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
 나. 주 소 :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 248
3. 점용(행위)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남리 20-1
4. 점용(행위)개요
 ○구 분 : 공작물설치
 ○당 초
 -취수탑(1기) : 3.0×5.0m
 -취수구(2개) : 2.0×1.4m, 2.0×1.2m
 -취수펌프 : 300HP×300mm-2대,
 300HP×250mm-2대
 ○변 경
 -취수탑(1기) : 3.0×5.0m
 -취수구(3개) : 2.0×1.4m, 2.0×1.2m,
 2.0×1.2m
 -취수펌프 : 300HP×300mm-2대
 300HP×250mm-2대
5. 기타 사항 : 변경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7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요지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개정	KS C 9210	가정용 조리기구
개정	KS C 9304	환풍기
개정	KS C 9305	전기냉장고 및 전기냉동고
개정	KS C 9306	에어 컨디셔너
개정	KS C 9307	전기 이불류
개정	KS C 9308	전기믹서
개정	KS C 9309	전기포트
개정	KS C 9310	전기 솥
개정	KS C 9311	전기 모발건조기
개정	KS C 9312	전기보온밥통
개정	KS C 9313	전자렌지
개정	KS C 9314	공기청정기
개정	KS C 9318	전기 탈수기
개정	KS C 9608	전기 세탁기
개정	KS C 9616	전기면도기
개정	KS C 9803	저탕식 전기온수기

2. 개정사유

가정용 전기기기 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IEC국제규격과 부합화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내용

누설전류, 부품 및 부속품, 연면거리·공간거리 및 절연거리, 내열, 내트랙킹, 내부식성 시험 추가 또는 강화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2년 1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응용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346, E-mail mclee@ats.go.kr)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7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격명
확인	KS B 6016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방법
〃	KS B 6324	기름회전 진공펌프
〃	KS B 6362	유압펌프 및 유압모터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규격내용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8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개정

1. 제·개정 사유

현행 KS규격에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국제단위계(SI)로 통일화하여 국제규격으로 부합화하고 제품규격을 상향 조정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2. 제·개정 규격 현황

구분	규격번호	규격명
제정	KS M ISO 12156-1 : 2001	디젤연료-HFRR을 이용한 윤활성 시험방법
〃	KS M ISO 12156-2 : 2001	디젤연료-HFRR을 이용한 윤활성 평가기준
〃	KS M IP 391 : 2001	석유제품-중간유분의 방향족 탄화수소 유형 시험방법
〃	KS M ISO 10370 : 2001	석유제품-잔류탄소분 시험방법-마이크로법
〃	KS M ASTM D 6278 : 2001	유럽식 디젤 분사장치를 이용한 폴리머 함유 유체의 전단 안정성 시험방법
〃	KS M ISO 4406 : 2001	유압작동유-고체입자에 의한 오염도 부호화 방법
〃	KS M ISO 4407 : 2001	유압작동유-현미경을 이용한 계수법에 의한 미립자 오염 측정방법
〃	KS M ASTM D 2983 : 2001	브룩필드 점도계에 의한 자동차용 윤활유의 저온점도 시험방법
〃	KS M IP PM AK : 2001	산화마이크로 전기량 분석에 의한 경질 및 중질 증류유의 염소분 시험방법
〃	KS M ASTM D 6296 : 2001	자동차용 가솔린 올레핀 시험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	KS M ASTM D 5800 : 2001	NOACK법에 의한 윤활유 증발감량 시험방법
〃	KS M ASTM D 4742 : 2001	박막가열 유도기법(TFOUT)에 의한 자동차용 가솔린 엔진오일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M ISO 649-1 : 2001	시험실용 유리기구-일반용도의 비중계 사양
〃	KS M ISO 3838 : 2001	석유계 원유와 액체 또는 고체 석유제품-밀도 또는 상대밀도 시험방법-모세관 마개를 한 비중계법과 눈금 양 모세관 비중계법
〃	KS M ISO 3734 : 2001	석유제품-잔사유의 물과 침전물 시험방법-원심분리법
〃	KS M ISO 4926 : 2001	수송용 차량-유압브레이크 시스템-비석유계표준액
〃	KS M ISO 3871 : 2001	수송용 차량-석유계 또는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용기에 대한 표시
〃	KS M ISO 9128 : 2001	수송용 차량-브레이크액의 종류를 표시하는 도형기호
〃	KS M ISO 3648 : 2001	항공유-참발열량 추정방법
〃	KS M ISO 8217 : 2001	석유제품-연료(F등급)-선박유의 규격
개정	KS M 2002 : 2001 (MOD ISO 3675 : 1998)	석유계 원유 및 액체석유제품-밀도 및상대밀도 시험방법-하이드로미터법
〃	KS M 2008 : 2001 (MOD ISO 4263 : 1996)	석유제품-산화방지제 첨가광유-산화안정도 시험방법
〃	KS M 2017 : 2001 (MOD ISO 6615 : 1993)	석유제품-잔류탄소분 시험방법-콘라드슨법
〃	KS M 2025 : 2001 (MOD ISO 6247 : 1998)	석유제품-윤활유의 기포성 시험방법
〃	KS M 2028 : 2001 (MOD ISO 3014 : 1993)	석유제품-연점 시험방법
〃	KS M 2039 : 2001 (MOD ISO 5164 : 1990)	자동차 연료-녹크성 시험방법-리서치법
〃	KS M 2041 : 2001 (MOD ISO 6246 : 1995)	석유제품-경질 및 중질 증류연료의 검 시험방법-분사증발법
〃	KS M 2043 : 2001 (MOD ISO 7536 : 1994)	석유제품-가솔린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유도기간법)
〃	KS M 2049 : 2001	그리스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	KS M 2071 : 2001 (MOD ISO 4257 : 1988)	액화석유가스-시료채취방법
〃	KS M 2106 : 2001 (MOD ISO 2049 : 1996)	석유제품-색 시험방법(ASTM Scale)
〃	KS M 2120 : 2001	터빈유
〃	KS M 2141 : 2001 (MOD ISO 4925 : 1978)	수송용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
〃	KS M 2610 : 2001	경 유

○규격내용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81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 M 2115 : 2001	증류연료의 물과 침전물 시험방법
〃	KS M 2057 : 2001	원유 및 석유제품-발열량 시험방법 및 계산에 의한 추정방법
〃	KS M 2052 : 2001	그리스류 광유분 분석방법

○규격내용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1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 길천포방파제 등대

○위 치 : N 35°19′19.44", E129°17′11.88"

○등 질 : Fl(2)R6s

○등 고 : 11m

○광달거리(M)

-지 리 : 11

-광 학 : 7

-명 목 : 5

○도색 및 구조높이(m) : 홍원형 파이프조(8.6)

○설치년월일 : 2001년11월17일

○비 고 :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7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두호항
2. 공사의 명칭 : 방파제 축조
3. 공사시행목적 : 어선의 안전정박으로 어가피해방지 및 어민소득증대
4. 공사시행장소 : 두호항내
5. 공사개요
 ○ 방파제축조 L=70m(북L=40m, 남L=30m)
 ○ 물양장축조 A=470㎡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700,000천원
8. 공사시행자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성 명 : 포항시장

⊙전파연구소고시제2001-373호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적합등록기기 내역 :

-성명또는상호 : 컴팩코리아(주)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 KB-9965/키보드 등 1,111건/E-C012-01-3011

○변경내역

-변경전 : 컴팩코리아(주)

-변경후 : 컴팩코리아(유)

○비 고 : 상호 변경

⊙전북체신청고시제2001-14호

무선국(항공국)폐지

전파법 제32조에 의하여 아시아나항공(주) 소유의 다음 무선국(항공국)을 폐지하고 전파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전북체신청장

1. 시설자 : 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
2. 무선국 허가번호 : 33-1995-70-0000001
3. 호출명칭 : 아시아나군산
4. 폐지일자 : 2001년11월22일

⊙경북체신청고시제2001-41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소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경북체신청장

1. 우편취급소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내역

총괄국명	구 분	취급소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우편용기호	일부인 한 글	일부인 영 문
대 구	해 지	대구동인	홍재식	대구 중구 삼덕2가 52 경북대병원구내	7007218	대구동인	DG.DONGIN
〃	설 치	〃	홍성국	〃	〃	〃	〃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라. 우편환 발행 및 지급
 마. 제세공과금 수납
3. 위탁계약 해지 및 개소일 : 2001년12월 1 일(토)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58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01-10호
2. 허가년월일 : 2001년11월12일
3. 명 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대표자 : 박형규
5. 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신동아화재빌딩
6. 설립목적
 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 수행
 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7. 사업내용
 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운영
 나.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수집 · 보존 · 관리
 다. 민주화운동의 기념 ·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67호

기부금품모집허가

농협중앙회 대표 정대근이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참여분위기 조성 및 아름다운 환경조성(꽃길, 꽃동산만들기, 푸른마을 가꾸기)을 위하여 제출한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01년11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방법 : 언론기관 광고를 통한 계좌이체, 농협 각 지점에서 현금(동전 중심) 및 물품(꽃씨, 꽃묘, 묘목) 접수
2. 모집기간 : 허가일부터~2002년 2 월28일까지
3. 모집지역 : 전국 일원
4. 금품의 종류 : 현금 또는 물품(꽃씨, 꽃묘, 묘목)
5. 모집예정수량 : 30억원(현금 및 물품)
6. 모집비용 : 농협중앙회 자체 부담

7. 보관방법 : 현금은 농협에 예금, 물품은 농협에서 자체 보관
8.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전화 397-5375)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48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문화관광부장관

1. 허가번 호 : 제323호
2. 허가연월일 : 2001년11월22일
3. 명 칭 : 사단법인 한일문화진흥협회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765
5. 대표자 : 문정호
6. 설립목적 : 한일양국의 문화예술 조사연구 및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문화예술 진흥 도모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22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월정~강릉)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현남~강릉)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노선명	구간 \ 차종	1종	2종	3종	4종	5종
영동선	횡 계~동서울	6,500	6,800	7,000	11,800	12,000
	~원 주	3,200	3,400	3,400	5,700	5,800
동해선	강 릉~동서울	7,400	7,700	7,900	13,400	13,700
	~원 주	4,100	4,300	4,400	7,400	7,500
	현 남~강 릉	1,100	1,100	1,100	1,700	1,700
	~원 주	4,600	4,800	4,900	8,200	8,400

5. 시설물의 명칭

현남·횡계·강릉영업소(월정영업소 철거)

6. 통행료 수납구간

-신 설 : 강원도 양양군 현남리 지경리 현남IC~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강릉JC

-폐쇄식 전환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유천리 월정TG~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강릉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현금 또는 고속도로카드로 통행요금 정산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1년11월28일~2007년11월30일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23호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50호선 횡계~강릉(영동고속도로)
3.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L=21.72km)
4. 주요경과지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강릉시 왕산면, 강릉시 성산면

5. 전용구간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L=21.72km)
6. 중용구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 2001년11월28일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24호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65호선 강릉~주문진(동해고속도로)
3.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L=19.96km)
4. 주요 경과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사천면, 주문진읍, 양양군 현남면
5. 전용구간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L=19.96km)
6. 중용구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 2001년11월28일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24호

항로표지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업종및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6호	(주)안전수중개발 대표이사 김경자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100-5	506-81-15994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7호	한국산업전기관리 홍 종 철	전남 목포시 용당1동 1091-46	411-32-61834

⊙중소기업청공고제2001-157호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	업체명	소재지	인증등급	인증품목	모기업
1-16-4-777	(주)동양정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516-6	싱글 PPM	TV브라운관 부품 프레임	삼성SDI(주)
1-07-9-778	(주)은성문화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91-1	싱글 PPM	제품사용설명서, 요리설명서 및 인쇄물	삼성전자(주)
1-05-4-779	(주)신광프렌트	광주 북구 동림동 1052-6	100 PPM	에어컨 열교환기 용접품	캐리어I(주)
1-13-6-780	한진금속공업(주)	경북 구미시 시미동 165-4	싱글 PPM	CRT-실리카 코팅용액 (AROC)	오리온전기 (주)
1-14-4-781	(주)대호엠엠아이	경남 창원시 팔용동 42-3	싱글 PPM	휴대 정보단말기 액정	삼성SDI(주)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모 기 업
1-14-9-782	(주)세림티티시	경남 양산시 북정동 127-3	싱글 PPM	TV브라운관 포장용 스치로폼	삼성SDI(주)
1-07-4-783	(주)동양크레디텍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634	싱글 PPM	실린게이지벤드 인너실더	삼성SDI(주)
1-11-9-784	신화기업사	전북 정읍시 덕안면 고부논공단지 5블록	싱글 PPM	진공청소기 천먼지봉투진공청소기종이먼지봉투	오리온전기(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1-82호

수질분야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질분야 형식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수질분야 형식승인 내역

○번 호 : 1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명 칭 : DO연속자동측정기(격막형 포라로그라프)

-형 식(Model) : YSI 600XL

-제작국 및 제작회사 : 미 국, YSI

○형식승인번호 : WTMS-DO-2001-10

○승인일 : 2001년11월21일

○비 고 : 신규

⊙낙동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86호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낙동강환경관리청장

1. 업체명 : (주)대능
2. 대표자 : 박후걸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중앙동 93-1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29호
5. 등록취소일자 : 2001년11월22일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68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구 분 : 등록

○업체명 : (주)리텍

○대표자 : 강건우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 경일대 특화센터내

○업 종 : 수질

○등록번호 : 수질 제188호

○등록일자 : 2001년11월21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69호

대기및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구 분 : 등록취소

○업체명 : (주)세명엔지니어링

○관리인 : 양득천

○소재지 : 대구 서구 평리동 1086-19

○업 종 : 대기수질

○등록번호 : 대기제119호, 수질제126호

○취소일자 : 2001년11월21일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3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1. 업소명 : (유)명지종합건설
2. 대표자 : 송백섭
3. 영업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772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71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01년11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260호

측량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양도·양수를 필하였기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양도자
 ○업 종 : 일반측량업 02-2450
 (신규등록일 1995. 1.18.)
 ○상 호 : 남광측지설계공사
 ○대표자 : 서일수(640216-*******)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2
2. 양수자
 ○업 종 : 일반측량업 02-2450
 (신규등록일 1995. 1.18.)
 ○상 호 : 남광측지설계공사
 ○대표자 : 강길원(650305-*******)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2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1-5호

우리청 관하 전주세무서 진안지서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순천세무서 벌교지서,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의 관인자동날인기에 사용할 세입징수관의인(인증기용)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처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전주세무서세입징수관의인(진안지서인증기용)



익산세무서세입징수관의인(김제지서인증기용)



순천세무서세입징수관의인(벌교지서인증기용)



해남세무서세입징수관의인(강진지서인증기용)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고제2001-1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 6.30.)에 의거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비스헌장

우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고객 여러분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그 실천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우리는 고객 여러분(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소비자) 모두를 성과 친절로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해 서비스헌장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만족은 바로 우리의 보람입니다=

1. 고객응대 자세

가.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는 전화벨이 3번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 인사말과 소속, 성명을 밝히고 정중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나 상담은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하고 상대방의 이해여부를 확인한 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 고객의 용건을 정확히 전달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전화번호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필요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최소 1시간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하신 경우

○사무실에는 업무별로 담당직원을 알려주는 안내도를 게시하고 직원자리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화를 할 때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습니다.

○방문 후 5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약속을 한 직원 또는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경우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사를 위해 현지에 출장하는 경우

○사전에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약속하고 조사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조사목적, 소요기간,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조사등의 경우에는 사전 예고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업무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드린 다음 그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접수 및 조사

가. 사건접수(신고)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시밀리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불공정거래신고」란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후 5일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사실과 담당자, 처리절차 등이 수록된 사건접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자료요구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최소범위내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명자료는 서면 또는 문서로 요청하겠습니다.

○직무상 알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사건 처리시 사건처리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드리고, 충분히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설명등 입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이내에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가 2개월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등을 기재한 중간 회신문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3. 사건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안내

○당사자등이 심판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5일전에 통지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등 권익보호를 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15일이내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6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기간연장시 연장사유등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

가. 고객의 의견접수 및 정보제공

○전화, 방문 또는 조사과정에서 불편이나 제언이 있을 경우 전화·FAX·우편·인터넷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이 담당직원의 착오등으로 잘못된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사실확인 즉시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해당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의 불친절로 인하여 동일사유로 2회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각각 5천원, 2천원상당의 실비를 보상하는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헌장 내용의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연 1~2회 실시하여 평가받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에 대한 협조 요청

공정거래관련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실천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그때그때 알려주시어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원서비스에 모범적인 직원을 보신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면 널리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모범적인 직원에게는 저희 사무실에 비치된 그린카드함에 그린카드를,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옐로우카드를 넣어주시면 친절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공정거래서비스 전화

○대구사무소 : 053)742-9141~6
FAX : 053)742-9149
-지도과 : 053)742-9142~3
-경쟁과 : 053)742-9144~5
-소비자보호과 : 053)742-7146
-주 소 : 706-715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

○타지역 지방사무소
-부 산 : 051)466-3191, FAX : 051)466-3244
-광 주 : 062)225-8462, FAX : 062)225-8460
-대 전 : 042)531-8575, FAX : 042)527-3064

○위원회 본부(과천)
-본부상담실 : 02)500-4507, 02)503-2387
-강북상담실 : 02)738-8352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과천종합청사(5동)

○고객의 소리,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
-대구사무소 : 053)742-9142
FAX : 053)742-9149
-대구사무소 E-mail : ftcld0@ftc.go.kr

-위원회 본부 : 02)507-1465~6

FAX : 02)502-7104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충청체신청공고제2001-12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충청체신청장

○업 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 제130237호

○상 호 : (주)한아름정보통신

○대표자 : 김치헌

○영업소재지 : 대전 서구 갈마동 393-4

○폐업일자 : 2001년 6 월30일

○비 고 : 자진폐업

⊙충청체신청공고제2001-12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충청체신청장

○등록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 제130346호

○상 호 : (주)대명건설

○대표자 : 김창준

○주민등록번호 : 580115-

○영업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9

○등록일자 : 2001년11월22일

○비 고 : 신규

⊙충청체신청공고제2001-12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충청체신청장

가. 별종공사업 양도사항

○양도자

-등록업종 : 별종공사업

-등록번호 : 충청115호

-상 호 : 남양통신

-대표자 : 이준기

-영업소재지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5-6

○양수자

-상 호 : (주)남양통신

-대표자 : 이준기

-영업소재지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5-6

○양도·양수계약일 : 2001년11월 3 일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

○등록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 제130347호

○상 호 : (주)남양통신

○대표자 : 이준기

○주민등록번호 : 611001-

○영업소재지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5-6

○등록일자 : 2001년11월22일

○비 고 : 종전 별종공사업

⊙김해우체국공고제2001-6호

김해우체국 관내 김해구산동우체국(6급)이 2001년 12월 3 일 개국하게 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2001년12월 3 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김해우체국장

○사용일자 : 2001년12월 3 일

김해구산동우체국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1년11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 지 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6호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서무과"를 "홍보과"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에 관한 사무
2.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교육·연수·개선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인사,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8. 감사, 예산·회계, 연금·의료보험,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산출·요구·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11. 공문서관리, 관인관수, 보안·비상계획, 도서·자료관리
12. 기타 사무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④지도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의 소송에 관한 사무
6. 지방선거 및 위탁선거의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
7. 행정심판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⑤홍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
2. 시민의식개선 등 상시계도에 관한 사항
3.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4. 각종 단체 등에 대한 선거지원
5.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6.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7. 계도·홍보기법의 연구개발

제12조제3항중 "관리담당관"을 각각 "지도담당관"으로 한다.

별표1중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경 기 도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여주군, 광주시, 포천군, 양평군	34
강 원 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	9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음성군	7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10

별표2중 총계 "1,867"을 "2,0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57"을 "1,623"으로 하며, 행정주사 "626"을 "732"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9"를 "14"로, 행정주사보 "388"을 "448"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0"을 "5"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인수원의 지출관 및 대리지출관란의 "행정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대리재무관란의 "관리과장"을 "지도과장"으로, 지출관란의 "서무과장"을 "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
지도담당관을 두는 위원회(제12조③관련)

시·도 위원회별	구·시·군 위원회명	사무국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하구	2
대구광역시	북구, 수성구, 달서구	3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부평구	3
광주광역시	북구	1
대전광역시	서구	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부천시원미구,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구, 용인시	7
충청남도	천안시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2

◇개정이유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시민의식개선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과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조사·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제와 사무분장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직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정원 166인(6급 111, 7급 55)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시민의식개선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서무과를 폐지하고 홍보과를 설치하여 과장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사무국내 각 과간 업무를 조정함(제11조, 별표1).

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담당관을 폐지하고 지도담당관을 설치함(제12조제3항).

다. 공무원정원 166인(6급 111, 7급 55)을 증원함(별표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384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1-769호(1991.12.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783호(1992.12.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34호(1999.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된 공릉2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하였기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서울특별시장

공릉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서울공릉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장 고 건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
 (1)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2)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계	236,683.5	231,340.8	5,411	5,366	16,286	16,152	688	698	229	232
공동주택	224,316.2	218,002.9	5,353	5,306	16,112	15,971	718	732	239	243
단독주택	12,367.3	13,337.9	58	60	174	181	141	136	47	45

※ 호당인구수 3.01인/세대 : 주택통계예측 [주기58541-293호('96.2.15)]

(2) 주택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에 관한계획

가구별(블록별)		표준평형(세대별 전용면적)		면 적(㎡)			층수(층)		건설호수(호)		용적율(%)		인구수(인)		인구밀도(인/ha)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계	계	-	-	224,316.2	218,002.9	감 6,313.3	-	-	5,353	5,306	-	-	16,112	15,971	718	732
1	1	85㎡초과	85㎡초과	10,171.1	10,171.0	감0.1	저층	저층	68	68	90	90	205	205	201	201
2	2	85㎡초과	85㎡초과	12,977.7	12,979.7	증2.0	저층	저층	90	90	90	90	271	271	209	209
3	3	85㎡초과	85㎡초과	30,828.9	30,799.9	감29.0	고층	고층	570	570	250	250	1,716	1,716	557	557
4	4	60㎡초과~85㎡	60㎡초과~85㎡	17,875.2	17,875.2	-	고층	고층	500	500	250	250	1,505	1,505	842	842
5	5	60㎡이하	60㎡이하	21,935.9	21,935.9	-	고층	고층	700	700	221	221	2,107	2,107	960	960
6	6	60㎡이하	60㎡이하	17,871.3	17,871.3	-	고층	고층	691	691	210	210	2,080	2,080	116	116
7	7	60㎡초과~85㎡	60㎡초과~85㎡	26,244.5	26,244.5	-	고층	고층	436	436	185	185	1,312	1,312	500	500
8	8	60㎡초과~85㎡	60㎡초과~85㎡	11,294.6	11,294.6	-	고층	고층	278	278	250	250	836	836	740	740
9	9	60㎡초과~85㎡	60㎡초과~85㎡	15,818.2	15,818.2	-	고층	고층	297	297	250	250	894	894	565	565
10	10	60㎡이하	60㎡이하	52,199.3	52,199.3	-	고층	고층	1,676	1,676	230	230	5,045	5,045	966	966
11	-	85㎡초과	-	6,286.2	-	감 6,286.2	저층	-	47	-	90	-	141	-	224	-
12	12	-	-	583.9	583.9	-	-	-	-	-				-	-	-
13	13			229.4	229.4											

※ 공동주택12, 13블록은 존치시설부지임

○ 단독주택에 관한계획

가구별(블록별) 변경전	가구별(블록별) 변경후	면적(㎡)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	층수(층) 변경전	층수(층) 변경후	건설호수(호) 변경전	건설호수(호) 변경후	인구수(인) 변경전	인구수(인) 변경후	인구밀도(인/ha) 변경전	인구밀도(인/ha) 변경후	비고
계	계	12,367.3	13,337.9	증970.6	3	3	58	60	174	180	141	136	
1	1	5,347.7	5,299.1	감48.6	3	3	22	22	66	66	123	124	
2	2	7,019.6	7,019.5	감0.1	3	3	36	36	108	108	154	154	
-	3	-	1,019.3	증1,019.3	-	3	-	2	-	6	-	59	

※ 단독주택 1블록내에 잔여지 331.6㎡ 포함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 계획

구분	규모 변경전	규모 변경후	단위수요량(kW)	전력 수요량(kW) 변경전	전력 수요량(kW) 변경후	비고
계	-	-	-	18,735	20,305	
주거용	5,411호	5,366호	3/호	16,233	16,098	
상업용	10,260㎡	10,260㎡	11/100㎡	1,129	1,129	
공공용	127,259㎡	127,259㎡	-	1,373	1,519	
학교	18,303	18,299	6/100㎡	1,098	1,098	
청소년수련시설	600	600	"	36	36	
청용의청사(사무실)	2,240	2,722	"	134	163	
사회복지시설	516	1,116	"	31	66	
종교시설	793	2,846	"	48	170	
기타	104,824	105,418	0.025/100㎡	26	26	

(2) 도시가스공급계획

구분	규모 변경전	규모 변경후	단위수요	수요량(㎥) 변경전	수요량(㎥) 변경후	비고
계	-	-		10,356	10,235	

구분	규모 변경전	규모 변경후	단위수요	수요량(㎥) 변경전	수요량(㎥) 변경후	비고
주거용	5,458호	5,366호	1.8㎥/호	9,824	9,658	
상업용	10,226㎡	10,260㎡	0.03㎥/㎡	307	308	
공공용	22,460㎡	24,997㎡	0.01㎥/㎡	225	269	

(3) 지역난방 공급계획

- 상개동 자원회수시설(연병합발전소)에서 관로를 통하여 공급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계획

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	비고
합계		-	29	4,514	58,462.9	58,880.5	증417.6	
대로	2류	30	1	392	14,383.2	14,387.0	증3.8	
중로	소계	-	9	1,879	27,139.6	27,178.4	증38.8	
	1류	20	2	268	5,411.9	5,394.4	감17.5	
	2류	15	3	823	12,164.9	12,159.6	감5.3	
	3류	12	4	788	9,562.8	9,624.4	증61.6	
소로	소계		15	1,856	14,712.3	14,451.7	감260.6	
	2류	8	10	1,368	11,622.1	11,316.8	감305.3	
	3류	6	5	488	3,090.2	3,135.0	증44.8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	4	387	2,183.9	2,184.1	증0.2	
	3류	6	2	319	1,907.0	1,907.0		
	3류	4	2	68	276.9	277.1	증0.2	
기타		-	-	-	43.9	679.2	증635.3	지구의 도로와 연계된 장역도로 포함

(2) 주차장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	비고
계			4,169.6	4,169.7	증0.1	
주차장 시설	1	공릉동 84-4 답 일원	3,105.8	3,105.8		
	2	공릉동 93-19 임 일원	1,063.8	1,063.9	증0.1	

마. 공원녹지계획(변경)

(1)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변경전	면 적 (㎡) 변경후	면 적 (㎡) 증감	비 고
계		-	19,432.2	19,432.3	증0.1	
근린공원	1	공릉동 93-19 임 일원	11,459.1	11,459.2	증0.1	
어린이공원	소 계	-	7,973.1	7,973.1		
	1	공릉동 산 184 1 임 일원	1,860.4	1,860.4	-	
	2	공릉동 240-251 대 일원	1,575.1	1,575.1	-	
	3	공릉동 93-18 대 일원	1,500.1	1,500.1	-	
	4	공릉동 121-63 대 일원	1,500.3	1,500.3		
	5	공릉동 107-176 선 일원	1,537.2	1,537.2		

(2) 녹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변경전	면 적 (㎡) 변경후	면 적 (㎡) 증감	비 고
계		-	22,760.4	22,688.0	감72.4	
완충녹지	소계	-	16,885.3	16,814.2	감71.1	
	1	공릉동 83답 일원	1,415.1	1,403.3	감11.8	
	2	공릉동 83-7답 일원	2,284.0	2,292.0	증8.0	
	3	공릉동 74-1도 일원	3,889.6	3,889.6	-	
	4	공릉동 103-66답 일원	3,009.4	2,996.1	감13.3	
	5	공릉동 107-232대 일원	392.4	364.0	감28.4	
	6	공릉동 107-176대 일원	1,641.5	1,616.1	감25.4	
	7	공릉동 107 233대 일원	890.2	890.2	-	
	8	공릉동 118선 일원	1,964.8	1,964.8	-	
	9	공릉동 산 208 18임 일원	1,398.3	1,398.1	-	
경관녹지	소계	-	5,875.1	5,873.8	감1.3	
	1	공릉동 산 208-18임 일원	1,962.7	1,961.4	감1.3	
	2	공릉동 산 121- 8임 일원	3,912.4	3,912.4	-	

바. 공공 및 편익시설에 관한 계획

(1)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3,420.0	
근린생활시설용지	1	공릉동 240-251대 일원	2,402.4	
	2	공릉동 107-70대 일원	1,017.6	

(2)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변경전	면 적 (㎡) 변경후	면 적 (㎡) 증감	비 고
계		-	30,506.1	30,499.3	감6.8	
초등학교	1	공릉동 산229-16임 일원	12,347.4	12,347.4	-	
중학교	소계		16,154.9	16,154.9	-	
	1	공릉동 산 229-1임 일원	16,151.8	16,151.8	-	
	2	공릉동 248-11대 일원	3.1	3.1	-	
대학교	소계		2,003.8	1,997.0	감6.8	
	1	공릉동 121-71대 일원	45.7	45.7	-	
	2	공릉동 122-4대 일원	9.4	9.4	-	
	3	공릉동 109-3천 일원	374.4	374.4	-	
	4	공릉동 107 70대 일원	717.6	717.6	-	
	5	공릉동 107-20천 일원	209.8	202.7	감7.1	
	6	공릉동 229 15임 일원	646.9	647.2	증0.3	

※ 중학교2, 대학교1,2,3,4,5,6은 지구외 토지(공릉중, 서울여자대학교)와 연계 사용 가능

(3) 공공청사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변경전	면 적 (㎡) 변경후	면 적 (㎡) 증감	비 고
계		-	1,588.5	3,087.6	증1,499.1	
파출소	소계	-	588.4	587.6	감0.8	
	1	공릉동 107 161대 일원	213.6	212.8	감0.8	
	2	공릉동 84-16답 일원	374.8	374.8	-	존치
동사무소	소계			2,500.0	증1,499.9	
	1	공릉동 산93-19임 일원	1,000.1	1,000.1	-	
	2	공릉동 267-5대 일원	-	1,499.9	증1,499.9	신설

(4) 종교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변경전	면 적(㎡) 변경후	면 적(㎡) 증감	비 고
계		-	1,320.8	4,744.3	증3,423.5	
종교시설	1	공릉동 산93-19임 일원	659.8	659.8	-	
	2	공릉동 107-173대 일원	661.0	655.4	감5.6	
	3	공릉동 240-16대 일원	-	3,429.1	증3,429.1	신설

(5)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860.5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1	공릉동 230-3대 일원	860.5	

(6) 청소년수련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청소년수련시설	1	공릉동 산93-19임 일원	999.8	

(7) 사무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사무실	1	공릉동 107-58대 일원	651.6	634.3	증17.3	존치

사.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계	'94	'95	'96	'97	'98	'99이후	비 고
용지 보상	변경전	380,855.9		308,800.0	45,699.0	15,233.0	5,548.1	5,575.8	
	변경후	380,131.0		291,182.0	45,615.0	21,287.0	6,462.0	15,585.0	
조성 공사	변경전	380,855.9	-		-	65,677.0	152,332.0	162,846.9	
	변경후	380,757.1	-	-	-	72,343.0	106,611.0	201,803.1	

아. 연차별 자금투입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 위 : 백만원)

구 분		계	'94이전	'95	'96	'97	'98	'99이후	비 고
계	변경전	290,943	169	226,207	34,210	14,013	6,994	9,350	
	변경후	295,874		226,155	35,770	16,661	5,013	12,275	
용지비	변경전	274,865	-	226,118	34,210	11,342	562	2,633	
	변경후	275,482		225,950	35,361	9,949	610	3,612	
개발비	변경전	16,078	169	89	-	2,671	6,432	6,717	
	변경후	20,392	-	205	409	6,712	4,403	8,663	

(2)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자체기금

4. 개발기간

가. 착공일 : 1992.12.28

나. 준공일 : 2001.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합 계	380,855.9	380,757.1	감98.8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240,103.5	234,760.8	감5,342.8	63.0	61.7	
단독주택	12,367.3	13,337.9	증970.6	3.2	3.5	3블럭 신설에 따른 면적 조정 소로3-5 폭원변경에따른 면적 조정
공동주택	224,316.2	218,002.9	감6,313.3	58.9	57.3	11블럭을단독,종교,공공청사용지로 변경에 따른 면적조정 블럭별 구시오차
근린생활시설	3,420.0	3,420.0	-	0.9	0.9	근린생활 2개소
공공시설용지	140,752.4	145,996.3	증5,243.9	37.0	38.3	
도로	58,462.9	58,880.5	증417.6	15.4	15.5	2개소 폭원 변경(보도설치)에 따른 면적 조정
공원	19,432.2	19,432.3	증0.1	5.1	5.1	-구적오차
녹지	22,760.4	22,688.0	감72.4	5.9	5.9	-구적오차
학교	30,506.1	30,499.3	감6.8	8.0	8.0	구적오차
공공청사	1,588.5	3,087.6	증1,499.1	0.5	0.8	-동사무소1개소 신설 파출소2(존치1 포함),
종교시설	1,320.8	4,744.3	증3,423.5	0.3	1.2	-1개소 신설
사회복지시설	860.5	860.5	-	0.2	0.2	-구적오차
주차장	4,169.6	4,169.7	증0.1	1.1	1.1	구적오차
청소년수련시설	999.8	999.8	-	0.3	0.3	-구시오차
사무실	651.6	634.3	감17.3	0.2	0.2	-구적오차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
- 면 적 : 변경전 : 380,855.9㎡ (115,209평)
 변경후 : 380,757.1㎡ (115,178평)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신설	노원구	공릉	240-323	대	20	20	강구자	노원구 공릉동 240-236				조성누락

8.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 : 생략(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비치)

⊙부산광역시고시제2001-303호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취지

현재 가동중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처리용량 340천톤/일)의 하수처리구역 중 용당동 및 감만동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이 일대의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를 차집하여 하수 이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중계펌프장을 설치코자 함.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전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61	하수도 (중계펌프장)	남구 용당동 123-25번지	-	280	280		

1) 건폐율·용적율·건물높이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 또는 m)	비고
60이하	400이하	5.0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배치장소 도면과 같음).

⊙인천광역시고시제2001-218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 수도권해양생태공원(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및지형도면승인

1. 인천 도시계획시설[공원 : 수도권해양생태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청 녹지조경과(전화 : 440-3672), 남동구청 도시정비과(전화 : 453-267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명 : 공원

○시설의 세분 : 근린공원

○공원명칭 : 수도권해양생태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번지 일원

3. 면 적 : 1,480,240㎡

4. 도시계획시설[공원 : 수도권해양생태공원(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별항

5. 도시계획시설[공원 : 수도권해양생태공원(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 남동구 도시정비과 비치)

□도시계획시설[공원 : 수도권해양생태공원(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1. 총괄조서

시설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총계			1,480,240	6,697	11,190	
공원시설	소계		458,100.4	6,697	11,190	
	장물시설	도로, 광장	46,745.4			
	조경시설	염전저수지, 개울녹이터, 휴게쉼터, 관상용식수대	197,355	-		
	운동시설	초지운동장	6,730		-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전시장, 청소년수련관, 수족관, 박물관, 해양생물표본전시관, 야외전시학습원, 물관생활체험장, 식물원, 기상 및 갯골관측관, 기상관측소, 생태관찰대, 엠진	134,706	4,337	7,848	
	편익시설	화장실, 탈방객안내소, 주차장	64,802	1,077	1,959	
	관리시설	관리초소, 관리사무소, 창고, 발전기실, 수분	7,762	1,283	1,383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공유수면	1,022,139.6			

2. 시설별 조시

가. 시설조시

시설구분	도면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비 고
총 계				1,480,240	6,697	11,190			
시 설 계				458,100.4	6,697	11,190			
0. 공통시설	소 계			46,745.4		-			
		도 로		44,793.4					
		광 장		1,952					
	0-1	진 입 광 장 1	논현동 1-8일원	1,417					
	0-2	진 입 광 장 2	논현동 1-3일원	535					
1. 조경시설	소 계			197,355		-			
		습 지		155,235					
	1-1	담수 습지	논현동 1-1일원	29,458					
	1-2	기수 습지	논현동 1-1일원	62,636					
	1 3	염생 습지	논현동 1 1일원	59,376	-				
	1 4	정화 습지	논현동 1-1일원	3,765	-				
		염선저수지		13,440	-				
	1-5	염선지수시	논현동 1-1일원	13,440					
		개목놀이터		9,100	-				
	1-6	개목놀이터	논현동1-1일원	9,100					
		휴게 쉘터		1,380		-			
	1-7	휴게쉘터 1	논현동1-1일원	620		-			
	1-8	휴게센터 2	논현동1-1일원	420		-			
	1 9	휴게쉘터 3	논현동1 1일원	340		-			
		관상용식수대		18,200					기존시설
	1 10	관상용식수대1	논현동1-1일원	13,300		-			기존시설
	1-11	관상용식수대2	논현동1-4일원	4,900					기존시설
2. 운동시설	소 계			6,730					
		초 지 운 동 장		6,730					
	2-1	초 지 운 동 장	논현동1-1일원	6,730					
3. 교양시설	소 계			134,706	4,337	7,848			
	3-1	전 시 장 1	논현동1-1일원	4,620	1,050	1,940		2층	해양수산과학관련전시시설
	3 2	청 소 년 수 련 관	논현동1 1일원	35,900	882	1,680		〃	청소년생태환경교육시설
	3 3	수 족 관	논현동1-1일원	3,990	210	416		〃	생태수족관
	3 4	박 물 관	논현동1 1일원	2,650	840	1,617		〃	해양박물관
	3 5	해양생물표본 전시관	논현동1-1일원	358	186	186		1층	
	3-6	야외전시 학습원	논현동1-1일원	4,270					
	3-7	관 찰 학 습 원	논현동1-1일원	5,380					
	3-8	물관생활체험장	논현동1-1일원	13,080					
	3-9	전 시 장 2	논현동1-4일원	4,450	119	119		1층	가족사진전시
	3-10	식 물 원	논현동1-1일원	10,290	630	1,092		2층	습지식물의 전시및 모니터링
	3-11	기상 및 갯골 관측관	논현동1-1일원	3,570	420	798		〃	
	3-12	기 상 관 측 소	논현동1 1일원	132	-	-			
		생 태 관 찰 대		10,385	-	-			
	3-13	생태 관찰대 1	공 유 수 면	2,224	-	-			
	3-14	생태 관찰대 2	공 유 수 면	1,650	-	-			

시설구분	도면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비 고
	3-15	생태 관찰대 3	공 유 수 면	3,180	-	-			
	3-16	생태 관찰대 4	논현동1-1일원	1,702					
	3-17	생태 관찰대 5	논현동1-1일원	558		-			
	3-18	생태 관찰대 6	논현동1-1일원	1,071					
	3-19	염 전	논현동1-1일원	35,631	-	-			
4. 편의시설		소 계		64,790	1,077	1,959			
	4-1	화 장 실	논현동 1-3일원	10	10	10		1층	
	4-2	휴방객안내소	논현동 1-1일원	4,750	1,067	1,949		2층	방문객 안내및유 게시설
	4-3	주 차 장	논현동 1-5일원	60,030					
5. 관리시설		소 계		7,774	1,283	1,383			
	5-1	관 리 초 소	논현동 1-3일원	200	200	200		1층	
	5-2	관리사무소 1	논현동 1-4일원	1,046	183	183		〃	
	5-3	관리사무소 2	논현동 1-4일원	665	100	200		2층	
	5-4	관리사무소 3	논현동 1-4일원	4,450	630	630		1층	공원관리 원교육장
	5-5	창 고	논현동 1-4일원	807	170	170		1층	
	5-6	발 전 기 장	논현동 1-5일원	12	-				
		수 분		594					
	5-7	수 분 1	논현동 1-1일원	384	-				
	5-8	수 분 2	논현동 1-5일원	210		-			
6. 녹지 및 기타		소 계		1,022,139.6					
		녹 지		245,550.6					
		공 유 수 면		776,589.0					

나.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고
총		개		7,197.2	44,793.4			
소 로	3	-1	10	110	1,100	공유수면	논현동1-4세	
소 로	3	2	10	383	3,830	논현동1-3세	〃	
소 로	3	3	10	126	1,260	〃	〃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고
소 로	3	4	8	875	7,000	논현동1-4세	논현동1-3세	
소 로	3	5	10	2215	22,150	〃	공유수면	
소 로	3	6	10	277	2,770	논현동66-10제	논현동66-11도	
산책로	-	1	2	896	1,792	논현동1-1염	논현동1-1염	
산책로	-	2	2	319	638	〃	〃	
산책로	-	3	2	450	900	〃	〃	
산책로	-	4	2	155	310	〃	〃	
산책로		5	3.5	30	105	〃	논현동1-1세	
산책로	-	6	2	75	150	논현동1-3제	논현동1-3제	
산책로		7	2	138	276	논현동1-1염	논현동1-1염	
산책로	-	8	2	75	150	〃	〃	
산책로		9	2	150	300	〃	〃	
산책로	-	10	2	270	540	논현동1-3제	논현동1-5구	
산책로	-	11	2	195	390	논현동1-1염	논현동1-1염	
산책로		12	12	9	108	논현동1-5구	논현동1-5구	
산책로		13	16	9	144	〃	〃	
산책로	-	14	2	380	760	〃	〃	
산책로	-	15	2	8.2	16.4	논현동1-3제	〃	
산책로	-	16	2	12	24	〃	〃	
산책로		17	2	8	16	논현동1-5구	〃	
산책로	-	18	2	32	64	논현동1-1염	논현동1-1염	

□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권해양생태공원(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도면 : "세재생략"(인천광역시장, 남동구청 비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1-21호

학교(군자공고)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413-1번지외 8필지의 군자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 : 별항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 지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번지

(2)성 명 : 경기도 교육감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고등학교

(2)명 칭 : 군자공업고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413-1번지외 8필지

사.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25,180㎡

○사업시행면적 : 25,180㎡

(2)규 모

○건축면적 (기존건물) : 3,411.94㎡

○건축연면적(기존건물) : 12,936.81㎡

(3)사업시행기간 : 2001년11월~2003년12월31일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사적면적 (M2)	시설결정 면적(M2)	시행면적 (M2)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비고
시흥시 거모동	1413-1	학	6,046	6,046	6,046	경기도교육감	
	1418-2	학	7,339	7,339	7,339	경기도교육감	
	1426	임	2,944	2,944	2,944	시흥시 거모동 1476-1 아주아파트4차 401-1102 이재국외 7인	
	1427	전	2,783	2,783	2,783	시흥시 거모동 1410-1 이 남섭	
	1428-1	전	1,534	1,534	1,534	시흥시 거모동 1410 이 부섭	
	1433	전	1,666	1,666	1,666	시흥시 거모동 1410 이 부섭	
	1679-1	학	1,063	529	529	국(교육부)	
	1679-2	구거	349	349	349	국(교육부)	
	산58	임	1,990	1,990	1,990	경기도교육감	
계	9필지			25,180	25,18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주소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 주소·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사적면적 (M2)	시행면적 (M2)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시흥시 거모동	1426	임	2,944	2,944	이재국	시흥시 거모동 1476-1 아주아파트 4차 401 1102	
					이재명	시흥시 거모동 1378	
					강부근	시흥시 거모동 1378	
					이경숙	시흥시 거모동 1378	
					이현숙	시흥시 거모동 1378	
					이미숙	시흥시 거모동 1378	
					이세경	하와이 호놀로우 에이브함딩 3353	
					이소명	시흥시 거모동 1378	
	1427	전	2,783	2,783	이남섭	시흥시 거모동 1410-1	
	1428-1	전	1,534	1,534	이부섭	시흥시 거모동 1410	
	1433	전	1,666	1,666	이부섭	시흥시 거모동 1410	
	1679-1	학	1,063	529	국(교육부)		
	1679-2	구거	349	349	국(교육부)		
계			10,339	9,805			

⊙(서울)중랑구고시제2001-90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85호(2001.11.2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중랑구 망우동 241-2번지일대	8,530	20%이하	50%이하	3층이하	

나. 지형도면 : 생략

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성비과(☎490-3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기장군고시제2001-541호

(부산)도시계획시설(도로)지형도면작성

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고시 제2001-435호(2001. 9.18.)와 부산광역시 기장군고시 제2001-436호(2001. 9.18.)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변경고시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고시 제2001-495호(2001.10.29.)로 정정고시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된 바 있는 길천 및 월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교통지적과, 허가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기 장 군 수

1. 도시계획시설(도로)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95	장안읍 길천리 188-52	장안읍 길천리 173-3	일반도로		'94. 3.11	
변경	"	"	"	"	"	105	장안읍 길천리 164 14	장안읍 길천리 483-1	"			실측에 의한 연장증가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88	장안읍 길천리 173-3	장안읍 길천리 477	일반도로		'94. 3.11	
변경	"	"	"	"	"	228	장안읍 길천리 483-1	장안읍 길천리 263-2	"			
기정	"	3	6	4	"	135	장안읍 월내리 631-2 (대3-1)	장안읍 월내리 630-4 (대3-1)	"		'97. 5.26	
변경	"	"	"	"	"	135	장안읍 월내리 631-2 (대3-1)	장안읍 월내리 630-4 (대3-1)	"			

○ 관계도면은 붙임과 같음.(도면생략)

○ 붙임도면 표시이외의 구간은 기정과 같음.

⊙양구군고시제2001-23호

공공시설입지승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시설 입지승인하였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건설과(지역계획계)에 비치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27일

양 구 군 수

가. 시설명 : 양구읍 하수 종말 처리장

나. 위 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16-6외 12필지

다. 용도지역 :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라. 지번, 지목, 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 별항

마. 승인년월일 : 2001년11월23일

바. 승인된 입지의 범위를 표시한 토지 ,임야도등본 : 생략

■ 편입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면적(㎡)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권리내용	비고
1	양구읍 하리	316-6	유		589	56.3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2	〃	318-2	전		301	84.6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5				
3	〃	318-4	유		1,204	609.2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4	〃	523-1	유		2,743	2,703.8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5	〃	523-3	유		995	768.0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5				
6	〃	523-4	유		278	278.0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7	〃	523-6	유		4,113	2,550.5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8	〃	523-7	유		145	121.6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9	〃	526-1	구		11,557	164.4	국(건설교통부)					
10	〃	산13	임		14,777	99.4	이종범	양구읍 송청리 60-11				
11	〃	산14-1	묘		14,087	1,770.6	국(재무부)					
12	〃	산14-2	임		31,041	64.6	김승기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74				
13	〃	522-2	유		256	36.9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14	〃	522-3	유		147	28.9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계				82,233	9,336.8						

⊙평창군고시제2001-400호

1. 평창군고시 제2001-171호(2001. 6. 7.)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고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평 창 군 수

가. 국토이용계획변경

○ 건 명 : 미탄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781-1번지 일원

○ 면 적 : 0.113㎢(112,724㎡)

- 변경내용

<당초>

·농 림 지 역 0.007㎢(7,059㎡)

·준농림지역 0.001㎢(828㎡)

·준도시지역 0.105㎢(104,837㎡) ⇒

<변경>

⇒ 준도시지역 0.008㎢(7,887㎡)

농 림 지 역 0.064㎢(63,611㎡)

준농림지역 0.041㎢(41,226㎡)

○ 국토이용(변경)결정조서 : 별항

나. 개발계획

○ 건 명 : 미탄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창리 781-1번지 일원

○ 면 적 : 0.239㎢(239,050㎡)

○ 취락지구개발계획 결정조서 : 별항

○ 취락지구 개발계획도(1/1,200) : 실업생략

□ 국토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단위 : ㎢)

구 분	도 시		준 도 시		농 림		준 농 림		자연환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평창군	14.759	-	24.532	24.435	937.177	937.234	345.584	345.624	141.410	-
미탄면	-	-	0.336	0.239	88.021	88.078	19.832	19.872	1.01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단위 : ㎢)

구 분	준 도 시 지 역						비고
	계			취락지구			
	기정	변경	증 감	기정	변경	증 감	
평창군	24.532	24.435	감 0.097	2.227	2.13	감 0.097	○ 미탄취락지구 ○ 면적 : 0.239㎢ ○ 관리번호 : 13 4
미탄면	0.336	0.239	감 0.097	0.336	0.239	감 0.097	

□ 개발계획수립

가. 취락지구 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창리취락지구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781-1번지 일원	0.336	감)0.097	0.239	관리번호 : 13-4

나. 용도구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	평		
합 계	239,050	72,313	100.0	
주거구획	177,892	53,812	74.4	
상업구획	16,115	4,875	6.7	
녹지구획	45,043	13,626	18.9	

다. 토지이용선성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39.050	100.0	
주 거 용 지	116.570	48.8	
상 업 용 지	11.577	4.8	
공공시설용지	28.857	12.1	공공의청사(면사무소), 학교, 광장
복지시설용지	4.943	2.0	복지회관, 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용지	2,834	1.2	오수처리장
기타시설용지	524	0.2	완충녹지
도 로	39.815	16.7	
녹 지	33.930	14.2	

라. 도로결정조서

○ 총괄표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비고
합 계		24	5,441	46,287	
중 로 2 류	15	1	875	13,125	
중 로 3 류	12	1	504	6,048	
소 로 2 류	8	5	1,529	12,232	
소 로 3 류	6	15	2,375	14,250	
소 류 3 류	4	2	158	632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사 용 형 태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5,441			
신설	중로	2	1	1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75 (321)	시축구역계 창리 산80임	창리 147 5도	()는 지구외
소계							875			
신설	중로	3	1	12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504	중 2-1 창리 616 2도	동측구역계 창리 1050 10도	

구분	규모 등급	규모 유별	규모 번호	규모 폭원(m)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소계							504			
신설	소로	2	1	8	일반도로	국지도로	662 (65)	창리 597답	창리 597답	()는 지구외
"	"	2	2	"	"	"	151	중2-1 창리722-1선	중3-1 창리773-9대	
"	"	2	3	"	"	"	328	중3-1 창리 766-4	소3-15 창리1050-26 천	
"	"	2	4	"	"	"	187	중3-1 창리 280-6대	소3-14 창리1050천	
"	"	2	5	"	"	"	201 (34)	소2-4 창리288-4도	창리 597답	()는 지구외
소계							1,529			
신설	소로	3	1	6	일반도로	국지도로	170	중2-1 창리 717-2전	중3-1 창리 759-2대	
"	"	3	2	"	"	"	67	중2-1 창리 731전	소3-3 창리739선	
"	"	3	3	"	"	"	139	소3-1 창리754전	소2-2 창리769-1대	
"	"	3	4	"	"	"	113	소3-1 창리 759-2대	소2-2 창리769-2대	
"	"	3	5	"	"	"	175	중2-1 창리 690답	중3-1 창리 778-14대	
"	"	3	6	"	"	"	234	중3-1 창리 693-2대	소2-2 창리 769-1대	
"	"	3	7	"	"	"	45	소3-5 창리 712-10전	평참 창리 706-3참	
"	"	3	8	"	"	"	64	소2-1 창리 782-4답	소2-3 창리 781-4대	
"	"	3	9	"	"	"	157	중3-1 창리 776-7대	소2-1 창리 271답	()는 지구외
"	"	3	10	"	"	"	214 (54)	중3-10 창리 615-3대	소2-5 창리 280-10답	
"	"	3	11	"	"	"	63	소 3-10 창리 615-3대	소 2-5 창리 280-10답	
"	"	3	12	"	"	"	136	중 2-1 창리1051-1	창리 608-1답	
"	"	3	13	"	"	"	136	소 2-3 창리 314-5답	소 3-15 창리 311답	
신설	소로	3	14	6	일반도로	국지도로	192	소 3-15 창리 260-1도	북측구역계 창리 301-1전	
"	"	3	15	"	"	"	416	소 3-14 창리 260-1도	북측구역계 창리 1050천	
"	"	3	16	"	"	"	92	소 2-5 창리 289-3대	소 2-1 창리 294대	
"	"	3	17	"	"	"	66	소 2-5 창리 284-8전	소 2-1 창리 285-8답	
소계							2,533			

마. 각종 시설물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37,158	
1	공용의청사	창리 618-1 선 일원	5,990	미탄면사무소
2	미탄초등학교	창리 776-1 학 일원	9,450	
3	미탄중학교	창리 611 학 일원	12,214	
4	오수처리장	창리 730 대 일원	2,834	
5	복지회관	창리 608 답 일원	1,136	
6	체육시설	창리 609 답 일원	3,807	
7	완충녹지	창리 735 대 일원	524	폭 : 10m
8	광장	창리 706-3 잡 일원	1,203	

⊙평창군고시제2001-401호

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491번지 일원의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평 창 군 수

가. 국토이용계획변경

○ 건 명 : 평촌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491번지 일원

○ 면 적 : 0.026㎢

○ 변경내용 : 준도시지역(취락지구) 0.026㎢ ⇒ 준농림지역 0.026㎢

○ 국토이용(변경)결정조서 : 별항

나. 개발계획

○ 건 명 : 평촌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491번지 일원

○ 면 적 : 0.167㎢

○ 취락지구개발계획 결정조서 : 별항

○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면(축척1/1,200) : 실음생략

□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단위 : ㎢)

구 분	도 시		준 도 시		농 림		준 농 림		자연환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평창군	14.759	-	24.435	24.409	937.234		345.624	345.65	141.410	-
봉평면	1.862	-	4.990	4.964	155.738		54.832	54.858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단위 : ㎢)

구 분	준 도 시 지 역						비 고
	계			취 락 지 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평창군	24.435	24.409	감 0.026	0.193	0.167	감 0.026	○ 평촌취락지구 ○ 면적 : 0.167㎢ ○ 관리번호 : 13-6
봉평면	4.990	4.964	감 0.026	0.193	0.167	감 0.026	

□ 개발계획수립

가. 취락지구 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평촌취락지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491번지 일원	0.193	감)0.026	0.167	관리번호 : 13-6

나. 용도구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	평		
합 계	167,000	50,517	100.0	
주거구획	131,500	40,989	78.7	
상업구획	13,000	3,932	7.8	
녹지구획	22,500	6,806	13.5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67,000	100.0	
주 거 용 지	110,000	65.9	
상 업 용 지	9,700	5.8	
녹 지	17,400	10.4	하천, 구거 포함
도 로	29,900	17.9	시가화구역대비 도로율 : 25.0%

라.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사 용 형 태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1개노선	3,730			
신설	중로	1	1	2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520	남측구역계 평촌리 436-2도	북측구역계 평촌리 544-2도	구역외 일부포함(국도 6호선)

구분	규모 등급	규모 류별	규모 번호	규모 폭원(m)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소계							520			
신설	소로	1	1	1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500	중1 1평촌리 481 1선	동측구역계 평촌리 903천	리도 203호.
소계							500			
신설	소로	2	1	8	일반도로	집산도로	550	중1-1 평촌리 443-4답	중1-1 평촌리 563-6구	
소계							550			
신설	소로	3	1	6	일반도로	국지도로	140	중1 1 평촌리 516-6도	소2 1 평촌리 509-3선	
"	"	3	2	6	"	"	32	중1-1평촌리 500-7전	소3-3 평촌리 500-6전	
"	"	3	3	6	"	"	320	소2 1 평촌리 485-1답	소2 1 평촌리 500-1전	
"	"	3	4	6	"	"	240	중1-1 평촌리 485-1답	중2-1 평촌리 492 3전	
"	"	3	5	6	"	"	250	소1 1 평촌리 355임	소3 6 평촌리 368전	
"	"	3	6	6	"	"	490	소2-1 평촌리 389 4선	소3-8 평촌리 338 3전	
"	"	3	7	6	"	"	328	소3-6 평촌리 387-1전	소3 8 평촌리 363-1선	
"	"	3	8	6	"	"	360	소3-6 평촌리 380전	북측구역계 평촌리 339답	
소계							2,160			

⊙평창군고시제2001-402호

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799-1번지 일원의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모입니다.

2001년11월27일

평 창 군 수

가. 국토이용계획변경

○ 건 명 : 면온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799-1번지 일원

○ 면 적 : 0.032㎢

○ 변경내용 : 준도시지역(취락지구) 0.032㎢ ⇒ 준농림지역 0.032㎢

○ 국토이용(변경)결정조서 : 별항

나. 개발계획

○ 건 명 : 면온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799-1번지 일원

○ 면 적 : 0.211㎢

○ 취락지구개발계획 결정조서 : 별항

○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도면(축척1:1,200) : 실음생략

□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단위 : ㎢)

구분	도시 기정	도시 변경	준도시 기정	준도시 변경	농림 기정	농림 변경	준농림 기정	준농림 변경	자연환경 기정	자연환경 변경
평창군	14.759		24.409	24.377	937.234	-	345.65	345.682	141.410	-
봉평면	1.862	-	4.964	4.932	155.738	-	54.858	54.89	-	

나. 용도지구 신청조서 (단위 : ㎢)

구분	준도시지역 계 기정	준도시지역 계 변경	준도시지역 계 증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기정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변경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증감	비고
평창군	24.409	24.377	감 0.032	0.243	0.211	감 0.032	○ 면온취락지구 ○ 면적 : 0.211㎢ ○ 관리번호 : 13-8
봉평면	4.964	4.932	감 0.032	0.243	0.211	감 0.032	

□ 개발계획수립

가. 취락지구 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면온취락지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799-1번지 일원	0.243	감)0.032	0.211	관리번호 : 13-8

나. 용도구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면 적 평	구성비 (%)	비 고
합 계	210,940	63,809	100.0	
주거구획	150,190	45,432	71.2	
상업구획	13,241	4,005	6.3	
녹지구획	47,509	14,372	22.5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0,940	100.0	
주 거 용 지	107,094	50.8	
상 업 용 지	10,375	4.9	
공공시설용지	10,900	5.2	면온초등학교
공 원 용 지	1,500	0.7	소공원 1개소
보건위생시설용지	1,514	0.7	오수처리장
도 로 용 지	39,280	18.6	
녹 지 용 지	40,277	19.1	

라. 도로 결정조서

■ 총괄표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27	5,375	39,918	
중 로 3 류	12	1	772	9,264	
소 로 1 류	10	1	93	930	
소 로 2 류	8	4	1,332	10,656	
소 로 3 류	6	21	3,178	19,068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합계							5,375			
신설	중로	3	1	12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772	동측구역계 면온리 1121-31선	북측구역계 면온리 777-2도	
소계							772			
신설	소로	1	1	10	"	집산도로	93	중3-1 면온리 802도	남측구역계 면온리 808전	
소계							93			
신설	"	2	1	8	"	국지도로	539	중 3-1 면온리 1131-31천	중 3-1 면온리 675-2도	
"	"	2	2	8	"	"	115	중 3-1 면온리 675-10도	면온초등학교 면온리 680-5도	
"	"	2	3	8	"	"	483	소 1-1 면온리 807선	중 3-1 면온리 675-6도	
"	"	2	4	"	"	"	195	중 3-1 면온리 1121-1선	서측구역계 면온리 824답	
소계							1,332			
신설	"	3	1	6	"	"	98	중 3-1 면온리 671-5도	소 2-1 면온리 1121-30천	
"	"	3	2	6	"	"	156	소 2-1 면온리 1121-30천	소 2-2 면온리 679-4대	
"	"	3	3	6	"	"	177	소 2-1 면온리 673임	소 2-2 면온리 679-14답	
"	"	3	4	6	"	"	81	소 2-1 면온리 681전	소 3-5 면온리 1126-2전	
"	"	3	5	6	"	"	113	소 3-3 면온리 680-9답	소 2-1 면온리 684-1전	
"	"	3	6	6	"	"	94	중 3-1 면온리 799-2전	소 2-2 면온리 679-16답	

구분	규모 등급	규모 류별	규모 번호	규모 폭원(m)	사용형태	기능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7	6	일반도로	국지도로	156	소 3-6 면온리 799-1전	소 2-1 면온리 1126-10천	
"	"	3	8	6	"	"	490	소 2-1 면온리 1121-30천	중 3-1 면온리 777-8전	
"	"	3	9	6	"	"	33	소 2-1 면온리 684-1전	소 3-8 면온리 685-1전	
"	"	3	10	6	"	"	153	소 3-8 면온리 685-1전	소 3-8 면온리 산134 1임	
"	"	3	11	6	"	"	73	소 2-1 면온리 795 3답	소 3-8 면온리 795 2전	
"	"	3	12	6	"	"	49	소 2-3 면온리 816-2전	소 3-13 면온리 816 3대	
"	"	3	13	6	"	"	188	남측구역계 면온리 1151-5-천	소 3-13 면온리 81	
"	"	3	14	6	"	"	144	소 3-15 면온리 산335-1임	소 2-4 면온리 814전	
"	"	3	15	6	"	"	176	남측구역계 면온리 1151 50천	소 3-13 면온리 810-2임	
"	"	3	16	6	"	"	137	소 3 14 면온리 811-2전	소 2-4 면온리 824답	
"	"	3	17	6	"	"	250	소 2-4 면온리 817-2대	소 3 19 면온리 790전	
"	"	3	18	6	"	"	106	소 2-4 면온리 813 1구	소 3-19 면온리 785답	
"	"	3	19	6	"	"	353	소 2-4 면온리 819전	소 2-3 면온리 790전	
신설	소로	3	20	6	일반도로	국지도로	94	소 2-3 면온리 790 7전	소 3-19 면온리 784답	
"	"	3	21	6	"	"	57	중 3 1 면온리 1121 1천	남측구역계 면온리 654 6 전	
소계							3,178			

마. 각종 시설물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3,914	
1	면온초등학교	면온리 683-2 학 일원	10,900	
2	소공원	면온리 673 인 일원	1,500	
3	오수처리장	면온리 654-6 전 일원	1,514	

바. 건폐율 및 용적율 등

용도구획		건폐율	용적율	비고
주거구획	단독주택	60%이하	100%이하	
	연립주택	40%이하	150%이하	
	공동주택	30%이하	200%이하	
상업구획		60%이하	200%이하	
녹지구획		20%이하	100%이하	

⊙평창군고시제2001-403호

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화암동) 58번지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평 창 군 수

가. 건 명 : 무이화암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화암동) 58번지 일원

다. 면 적 : 0.175㎢

라.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조서 : 별항

마. 준도시취락지구 개발 및 보전계획도(축척1:1,200) : 실음생략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결정조서

가. 취락지구 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 고
	가 정	변 경			
기정	무이 취락지구	무이화암취락지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58번지 일원	0.175	관리번호 : 13 - 7

나. 용도구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	평		
합 계	175,000	52,937	100.0	
주거구획	121,124	36,640	69.2	
상업구획	12,039	3,642	6.9	
녹지구획	41,837	12,655	23.9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5,000	100.0	
주 거 용 지	84,108	48.1	
상 업 용 지	11,491	6.6	
도 로	35,590	20.3	
완 충 녹 지	3,929	2.2	8개소
공 원	4,007	2.3	2개소
공 공 공 지	5,920	3.4	6개소
문화시설용지	9,532	5.4	평창 무이 예술관
하 천	19,923	11.4	
오수처리장	500	0.3	

라. 도로 결정조서

■ 총괄표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24	4,588	35590	
중 로 3 류	12	1	684	7466	
소 로 1 류	10	1	185	1454	
소 로 2 류	8	14	2,850	21655	
소 로 3 류	6	8	869	5015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4,588			
신설	중로	3	1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684	국도6호선변 무이리 36-17전	지구북동쪽 무이리 6-2전	
소계							684			
신설	소로	1	1	10	일반도로	집산도로	185 (45)	무이리 11-17전	무이리 71-1전	()는 지구외
소계							140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1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06	국도6호선변 무이리 63-4도	무이리 61답	
"	"	2	2	8	"	"	149	국도6호선변 무이리 62-3답	무이리 58-1전	
"	"	2	3	8	"	"	107	국도6호선변 무이리 2-5도	무이리 61답	
"	"	2	4	8	"	"	349	무이리 71-1선	무이리 59-1전	
"	"	2	5	8	"	"	137	무이리 72-1전	무이리 69-1답	
"	"	2	6	8	"	"	112	무이리 58학	무이리 57-1대	
"	"	2	7	8	"	"	180	무이리 산137-1임	무이리 83-2답	
"	"	2	8	8	"	"	426	무이리 85학	무이리 86-2전	
"	"	2	9	8	"	"	130	종로 3-1 무이리 83-5전	소로 2-9 무이리 83-5전	
"	"	2	10	8	"	"	101	종로 3-1 무이리 77-1선	소로 2-9 무이리 83-5전	
"	"	2	11	8	"	"	450	무이리 79-1전	무이리 84답	
"	"	2	12	8	"	"	129	무이리 33-2전	무이리 11-8전	
"	"	2	13	8	"	"	122	무이리 7 6찬	무이리 9 10전	
"	"	2	14	8	"	"	352	무이리 11-8전	무이리 9-11전	
소계							2,850			
신설	"	3	1	6	"	"	139	무이리 69-1답	무이리 59-1선	
"	"	3	2	6	"	"	94	무이리 69답	무이리 69-1답	
"	"	3	3	6	"	"	81	소로 2 10, 무이리 83-5전	소로2-8, 무이리 83-2답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4	6	일반도로	국지도로	118	소로 2 10, 무이리 83 5전	소로 2-8, 무이리 83-2답	
"	"	3	5	6	"	"	114	무이리 74전	무이리 75-2대	
"	"	3	6	6	"	"	98	무이리77 1전	무이리 79-1전	
"	"	3	7	6	"	"	106	소로 2 9 무이리 79-1전	소로 3-6 무이리 79-1전	
"	"	3	8	6	"	"	119	무이리 9-11전	무이리 8답	
소계							869			

바.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높이계획

구분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공동주택
층수	5층이하	10층이하

■ 밀도계획

구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녹지용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건폐율(%)	60이하	40이하	30이하	60이하	40이하
용적율(%)	100이하	150이하	200이하	200이하	100이하

■ 건축물의 배치계획

구분	12m도로, 국도6호선	6m, 8m, 10m 도로변	6m, 8m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2m	1m

⊙아산시고시제2001-126호

배방도시계획변경에따른지형도면승인

배방 도시계획(일부 용도지역 등)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되었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아산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27일

아 산 시 장

○배방 도시계획(일부용도지역등)변경결정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항

○배방 도시계획(일부용도지역등)변경결정지형도면 승인도면 : 게재생략

1. 용도지역결정(변경)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7,603,000	-	7,603,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1,630,000	-	1,630,000	21.4	
	일반주거지역	1,630,000	-	1,630,000	21.4	
	준주거지역	-	-	-	-	
상업지역	소 계	46,100		46,100	0.6	
	일반상업지역	46,100	-	46,100	0.6	
	근린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340,000	증)33,464	373,464	4.9	
	일반공업지역	340,000	증)33,464	373,464	4.9	
녹지지역	소 계	5,586,900	감)33,464	5,553,436	73.1	
	자연녹지지역	4,920,500	감)33,464	4,887,036	64.3	
	생산녹지지역	216,400	-	216,400	2.9	
	보전녹지지역	450,000	-	450,000	5.9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지형도면승인조서

○녹 지

-구 분 : 변경

-도면표시번호 : 3

-시설명 : 녹지

-시설의 세분 : 완충녹지

-위 치 : 배방면 공수리 379-1일원

-면 적

· 기 정 : 36,330㎡

· 변 경 : (증)3,235㎡

· 변경후 : 39,565㎡

-최초결정일 : 1994년 1 월21일

⊙부안군고시제2001-259호

부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1. 부안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도시경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부 안 군 수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결정일
폐지	부안중 동중학교	부안읍 동중리 83-3번지 일원	14,723	14,723	0	'77.7.20
신설	부안동초등학교	부안읍 봉덕리 448번지 일원	0	24,634	24,634	학교 이전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고시제2001-44호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업촉진지구에 대하여 조선기자재공장 입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고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거 제 시 장

1. 건 명 : 경상남도 거제지역 산업촉진지구(한내지구)개발계획수립
2. 주요내용

가. 위 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76번지 일원

나. 금회확장면적 : A=0.051㎢(51,136㎡)

다. 개발계획입안사유 : 조선기자재 공장입지

3. 국토이용계획도면 : 실음생략(거제시 도시과 비치)
4. 개발계획도면 : 실음생략(거제시 도시과 비치)
5. 국토이용계획결정조서 : 별항
6. 개발계획조서 : 별항

국토이용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육지)

(단위 : ㎢)

용도지역 / 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	육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거제시	399.958 (134.933)	69.255	6.125	6.176	증0.051	58.957 (22.118)	58.956 (22.118)	감0.001	227.705 (112.815)	227.655 (112.815)	감0.050 -	37.916 (134.933)	37.916 (134.933)	-
연초면	39.973	5.227	0.620	0.671	증0.051	6.127	6.126	감0.001	27.999	27.949	감0.050 -	-	-	-

나. 용도지구

용도지구 / 행정구역	계			산업촉진지구			취락지구	시설용도지구	수산자원보전지구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거제시	159.184 (134.933)	159.235 (134.933)	증0.051 -	0.292	0.343	증0.051	3.908	1.925	153.059 (134.933)	153.059 (134.933)	-	※ 지구명 : 한내지구 ※ 변 적 : 0.127㎢) (급회승기 A-0.051㎢) ※ 관리번호 : 10 -48
연초면	0.620	0.671	증0.051	0.075	0.126	증0.051	0.545	-			-	

다. 개발계획조서

구분	명칭	결정면적(㎡)						비고
		기정	비율(%)	금회확장	비율(%)	총괄현황	비율(%)	
공업용지	소계	55,340.3	73.81	30,672.5	59.98	86,012.8	68.20	
	조선기재공장	19,466.6	25.96	14,337.5	28.04	33,804.1	26.81	
	옥외크레인작업장	10,405.0	13.88	8,428.0	16.48	18,833.0	14.93	
	자재야적장	25,468.7	33.97	7,907.0	15.46	33,375.7	26.46	
녹지	소계	5,976.0	7.97	10,431.0	20.40	16,407.0	13.01	
	시설녹지	5,976.0	7.97	9,235.0	18.06	15,211.0	12.06	
	구거	-	-	1,196.0	2.34	1,196.0	0.95	
공용지	소계	13,658.7	18.22	7,672.5	19.62	21,331.2	18.79	
	본관	930.8	1.24	1,129.0	2.21	2,059.8	1.63	
	사무동	1,418.2	1.89	812.5	1.59	2,230.7	1.77	
	화장실	109.7	0.15	-	-	109.7	0.09	
	수위실	-	-	9.0	0.02	9.0	0.01	
	소각장	60.0	0.08	-	-	60.0	0.05	
	단지내도로	10,520.0	14.03	5,055.0	9.89	15,575.0	12.35	
	주차장	620.0	0.83	3,027.0	5.91	3,647.0	2.89	
계		74,975.0	100.00	51,136.0	100.0	126,111.0	100.0	

라.시설물계획(변경)

시설명	면적		비고
	㎡	평	
공장건물	14,075.00	4,257.70	선박구성부분품제작 4개사
부대건물	1,957.50	592.13	식당,샤워장,사무실 및 기타
계	16,032.50	4,849.83	

⊙김해시고시제2001-69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지형도면승인

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52호(2001. 5. 3.)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부곡리간 154kV 송전선로에 대하여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제5조,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27일

김 해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 신설
○시설명 : 전기공급설비
○위 치 :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산67번지 일원
○면 적
-기 정 : -
-변 경 : 1,955㎡
-변경후 : 1,955㎡
○최초결정일 : 2001년 5 월 3 일(산업자원부고시 제2001-52호)
○비 고 :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

나. 관련도면 : 실음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47호

일반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청구건설(주)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168
○대표자 : 김준채
○법인번호 : 110111-235787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8-14
○경력임원 : 조치형
○등록일 : 2001년11월19일
2. 상 호 : 한길건설(주)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169
○대표자 : 한상만
○법인번호 : 110111-1625627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14
○경력임원 : 신부균
○등록일 : 2001년11월19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51호

서울신내지구(4공구)택지개발사업완료공고

건설부고시 제1990-138호(1990. 3.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되어 건설부고시 제1991-521호(1991. 9. 3.)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391호(1991.12.30.)로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0호(2001. 6.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신내지구(4공구)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 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신내지구(4공구)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다. 대표자 성명 : 시장 고 건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17,394.8㎡

나. 사업시행지의용도별면적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7,394.8	100.0	
주택건설용지	15,432.3	7.1	
단 독 주 택	9,532.0	4.4	단독주택 40호 (40필지)
근린생활시설	5,900.3	2.7	2개소(2필지)
공공시설용지	201,962.5	92.9	
도 로	55,000.4	25.3	20개노선 (27필지)
광 장	38,606.1	17.8	1개소
공 원	11,536.3	5.3	1개소
녹 지	32,358.4	14.9	12개소
하 천	35,674.9	16.4	1개소
주 차 장	11,489.7	5.3	2개소
사회복지시설	3,118.9	1.4	1개소
사회체육시설	5,222.6	2.4	1개소
종 교 시 설	3,215.7	1.5	3개소
통 신 시 설	5,739.5	2.6	1개소

5. 준공일자 : 2001년 6 월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의 관리처분조서

구 분	면 적(㎡)	소 유 자	관리처분사항
합 계	217,394.8		
주택건설용지	15,432.3		
단 독 주 택	9,532.0	서울특별시	택지개발촉진법
근린생활시설	5,900.3	서울특별시	제18조의 규정에 택지공급
공공시설용지	201,962.5		
도 로	55,000.4	서울특별시	택지개발촉진법
광 장	38,606.1	서울특별시	제25조의 규정
공 원	11,536.3	서울특별시	에 의거 관리청
녹 지	32,358.4	서울특별시	에 무상귀속
하 천	35,674.9	서울특별시	
주 차 장	11,489.7	서울특별시	택지개발촉진법
사회복지시설	3,118.9	서울특별시	제18조의 규정에
사회체육시설	5,222.6	서울특별시	의거 택지공급
종 교 시 설	3,215.7	서울특별시	
통 신 시 설	5,739.5	서울특별시	
하수도시설	(207.4)	서울특별시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조서

(1)도로시설조서

연번	등급	유별	번 호	폭원(m)	사 용 형 태	기 능	연 장(m)	면 적(㎡)	준공후관리청
1	대로	2	88	25~35	일 반 도 로	보조간선도로	1,200	21,048.1	서울특별시
2	대로	3	187	19~63	자동차전용도로	구 획 도 로	430	3,120.3	서울특별시
3	중로	1	353	20	일 반 도 로	보조간선도로	8	206.0	서울특별시
4	중로	2	349-1	15	일 반 도 로	국 지 도 로	64	1,250.1	중랑구청
5	중로	3	363	12	일 반 도 로	국 지 도 로	148	1,780.5	중랑구청
6	중로	3	364	12	일 반 도 로	국 지 도 로	136	2,698.6	중랑구청
7	소로	1	2	10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	19.8	중랑구청
8	소로	1	3	10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	16.7	중랑구청
9	소로	1	6	10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64	636.4	중랑구청
10	소로	1	7	10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57	552.2	중랑구청
11	소로	2	1	8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56	401.9	중랑구청
12	소로	2	2	8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145	1,190.6	중랑구청
13	소로	2	4	8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72	474.6	중랑구청
14	소로	2	5	8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84	686.1	중랑구청
15	소로	2	7	8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36	585.0	중랑구청
16	소로	2	8	8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64	527.3	중랑구청
17	소로	2	9	8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64	533.5	중랑구청

연번	등급	유별	번 호	폭원(m)	사 용 형 태	기 능	연 장(m)	면 적(㎡)	준공후관리청
18	소로	3	13	4	일 반 도 로	구 획 도 로	4	341.8	중랑구청
19	소로	3	3	6	보행자전용도로	구 획 도 로	58	350.9	중랑구청
20	소로	3	5	4	보행자전용도로	구 획 도 로	5	11.9	중랑구청

(2)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준공후관리청	비 고
4공구	중랑구 묵동 15-1 답 일원	38,606.1	서 울 특 별 시	

(3)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준공후관리청	비 고
4공구	노원구 공릉동 60-1 일원	9,122.3	노 원 구 청	
	중랑구 묵동 26-1 일원	26,552.6	중 랑 구 청	

(4)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번 호	면 적(㎡)	준공후관리청	비 고
4공구	공릉동 63 일원	1	11,536.3	서 울 특 별 시	

(5)하수도시설

구 분	위 치	면 적(㎡)	준공후관리청	비 고
4공구	중랑구 신내동 673답 일원	207.4	중 랑 구 청	통신시설부지내지하 중복시설 폭3.6m, 연장 58m, 토피심도 2m

(6)녹지계획

구 분	위 치	4공구 번 호	4공구 면 적(㎡)	준공후관리청	비 고
4공구	-	소계	32,358.4		
	공릉동 284-2전 일원	1	1,360.7	노 원 구 청	
	공릉동 286-16하천 일원	2	518.8	중 랑 구 청	
	묵동 16-11답 일원	3	1,942.0	중 랑 구 청	
	신내동 679전 일원	4	104.6	중 랑 구 청	
	공릉동 63-1답 일원	10	646.1	노 원 구 청	
	묵동 61-3답 일원	14	35.3	중 랑 구 청	
	신내동 724 일원	15	3,381.3	중 랑 구 청	
	신내동 727답 일원	16	16,881.1	중 랑 구 청	
			2,913.5	노 원 구 청	
	신내동 723답 일원	17	2,747.8	중 랑 구 청	
	묵동 39-4답 일원	20	548.0	중 랑 구 청	
	묵동 16-8답 일원	21	432.9	중 랑 구 청	
	묵동 39-7답 일원	22	846.3	중 랑 구 청	

7.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전화 : 3707-8293),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전화 : 3410-7162),중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 490-3400~1) 및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전화 : 950-33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01-535호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부산광역시장

1. 상호명 및 대표자 : (주)제일소방공사, 김은식 (611010-)
2. 위 치 : 부산 사상구 괘법동 928-14
3. 등록종별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4 등록번호 및 일자 : 부산 제2001-39호(2001.11. 22.)
5. 실질자본금 : 118,499,000원

⊙인천광역시공고제2001-492호

일반건설업자진반납공고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자진반납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인천광역시장

○상 호 : 금성종합건설(주)
○대표자 : 정승일
○법인등록번호 : 120111-0186363
○업종 및 면번 : 토목-04-0015
○소재지 : 인천 남구 주안동 116-11
○반납일자 : 2001년11월20일
○반납사유 : 자진반납

⊙광주광역시공고제2001-503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광주광역시장

1. 허가번호 : 제2001-11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온누리장묘연구회
3. 대표자 : 임금용
4. 허가년월일 : 2001년11월22일
5. 주된사무소 : 광주 동구 학동 73-4
6. 설립목적 : 매장, 화장, 장례, 묘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장례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함.
7. 근 거 : 민법 제32조

⊙대전광역시공고제2001-428호

일반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대전광역시장

○업 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제06-0197호
○상 호 : : (주)홀리랜드
○대표자 : 유명순
○법인(주민)등록번호 : 160111-0127187
○영업장 소재지 : 대전 유성구 신성동 145-3
○등록일자 : 2001년11월22일
○경력임원 : 고봉조
○비고(기보유) : -

⊙충청남도공고제2001-304호

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공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충청남도지사

1. 명 칭 : 온천미술관
2. 위 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352-1
3. 유 형 : 제1종 박물관
4. 규 모 : 부지 390㎡, 건축연면적 330.96㎡
5. 사업기간 : 2001년11월~2002년11월
6. 설립자 : 대전 서구 괴정동 45-10 서동환

⊙경상북도공고제2001-308호

칠곡중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 및시행인가공고

칠곡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의 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사업의 명칭 : 칠곡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위치 : 칠곡군 석적면 남율·중리 일원
4. 시행면적 : 231,412㎡
5. 사무소의 소재지 : 칠곡군 석적면 중리 147-3
6. 사업기간 : 인가일로 부터 3년
7. 사업인가일 : 2001년11월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칠곡군 석적면 중리 147-3
 나. 성 명 :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9. 기타사항
 가. 시행인가 도서에 의함.
 나. 관계도서는 칠곡군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남도공고제2001-438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정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경상남도지사

○인정번호 : 경남 제3-59호
○제작사 : 삼중테크(주)
○대표자 : 대표 이형석
○종류 및 방식 : 다층순환식 2단각형 상부승입식(중렬)16대형
○주차장치 명칭 : SAMJUNG-2FD-16C
○인정일자 : 2001년11월21일

⊙(서울)동작구공고제2001-366호

전문건설업등록반납수리공고

다음의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전문건설업 등록 자진반납신청이 있어 이를 수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동작구청장

전문건설업등록반납수리내역

○업 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번호 : 마포98-07-04
○상 호 : (주)조양환경
○법인번호 : 110111-1596175
○대표자 : 노남규
○영업소재지 : 동작구 상도동 25-28
○수리일자 : 2001년11월22일
○수리사유 : 자진반납

⊙(부산)금정구공고제2001-68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금정구청장

1. 공고기간 : 2001년11월26일~2001년12월 9 일
2. 신고처 : 부산 금정구청 재무과(051-519-415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지 번 : 497-92
 ○지 목 : 대지
 ○면 적 : 94㎡
 ○비 고 : 미등록지

⊙(부산)동구공고제2001-206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동 구 청 장

1. 전문건설업등록현황
○상 호 : (주)지드 건축의장
○대표자 : 권범철
○등록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부산동구 제2001-01-04
○소재지 : 부산 동구 수정동 1028-22
동남빌딩 501호
○법인(주민)등록번호 : 180111-0380624
2. 등록일자 : 2001년11월22일

⊙(인천)연수구공고제2001-163호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연 수 구 청 장

업체명및대표자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및 근 거
유 진 토 건(주) 윤 명 석	토공사업 인천 94-02-12 포장공사업 인천 94-16-02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6-5	영업정지7개월 (2002. 1. 4.~ 8. 3.)	전문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기술자)건설산 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장 원 건 설(주) 금 보 연	토공사업 인천 92-02-1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 92-10-14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6-5	영업정지3개월 (2001.11.23.~ 2002. 2.22.)	전문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주)오성건설공사 오 성 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 92-10-82	인천 연수구 청학동 60-16	영업정지3개월 (2001.11.23.~ 2002. 2.22.)	전문건설업등록기준미달 (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강 토 건 설(주) 이 기 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천 95-07-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 99-10-15 강구조물공사업 충북 94-21-07 토공사업 인천 97-02-16	인천 연수구 청학동 268 45BL-6lt 청산빌딩 2층	영업정지7개월 (2001.11.23.~ 2002. 6.22.)	전문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일 양 개 발(주) 문 복 희	조경식재공사업 인천 94-18-0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천 94-19-07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7-9 대광빌딩 601호	영업정지8개월 (2002.2.20.~ 10.19.)	전문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기술자)건설산 업기본법 제83조제2호, 하자보수미이행부정당업 자로통보받음
신우엔지니어링(주) 신 종 창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인천계양 98-27-31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7-12	영업정지3개월 (2001.11.23~ 2002. 2.22.)	전문건설업등록기준미달 (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주)구 산 프 랜 트 박 병 선	기계설비공사업 충북-12-4 (취득일 : '78. 5.13.)	인천 연수구 옥련동 547-10	영업정지7개월 (2001.11.23.~ 2002. 6.22.)	전문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인천)중구공고제2001-387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자진반납)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자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중 구 청 장

○말소일자 : 2001년11월23일

상 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대원환경(주)	한 봉 문	120111-0185084	토공사업 인천 99-02-1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천남동 00-07-04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5
인해토건(주)	강 성 구	124611-026248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 99-13-29	인천 중구 해안동 8-2(2층)

⊙(대전)서구공고제2001-824호

건설업등록기준미달업체청문통지서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하고자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01년11월27일

서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관련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2. 당사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합)제 트 설 비	박현규	서구 정림동 226-140
유니온한성산업개발(주)	조주원	서구 탄방동 719 유니온빌딩 6층
(주)누 리 엔 지 니 어 링	황철성	서구 탄방동 99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설업의 등록기준미달 및 장기휴폐업, 청문불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제8호
6. 청 문
 ○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 건설과
 ○주 소 : 대전 서구 갈마동 343-28
 ○일 시 : 2001년12월 7 일 오전 10 : 00~16 : 00
 ○장 소 : 서구청 설계상황실(2층)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성 명 : 이병승
7. 기타사항 : 청문일에는 신분증, 법인사용인감(도장),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자 봉급대장사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확인서, 재무재표등 등록기준 제반서류를 지참 제출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준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이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구 건설과(520-3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남구공고제2001-461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우리구 관내 전문건설업자의 건설등록업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남 구 청 장

○업체명 : 중앙기초건설(주)
○대표자 : 오홍권

○소재지 : 울산 남구 옥동 265-13
○업종 및 등록번호
-토공사업 울산남구 2000-02-13
○처분내용 : 등록말소(2001.11.24.)
○처분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신규등록
○적용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등록말소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부천시공고제2001-503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부 천 시 장

○등록일자 : 2001년11월23일
○등록번호 : 부천 2001-29-0003
○업 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명 : (주)조은우리
○대표자 : 허정숙
○주민(법인)등록번호 : 121111-0090448
○영업소재지 : 부천 원미 심곡 161-20

⊙부천시공고제2001-504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부 천 시 장

○등록일자 : 2001년11월23일
○등록번호 : 부천 2001-05-0003
○업 종 : 도장공사업
○업체명 : (주)대지산업개발
○대표자 : 양재금, 윤진규
○주민(법인)등록번호 : 121111-0089037
○영업소재지 : 부천 원미 도당 214-3

⊙평창군공고제2001-404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전문건설업등록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말소사항이 있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평 창 군 수

○상 호 : 우영토건(주)
○대표자 : 남궁영
○업종 및 등록번호
-토공사업 : 강원 2001-02-3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강원 2001-10-67
○영업소재지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52
○말소일자 : 2001년11월22일
○사 유 : 자진반납

⊙청주시공고제2001-431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청 주 시 장

○상 호 : 호암설비
○대표자 : 정충선
○소재지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3-7
○업종 및 등록번호
-난방시공업제2종 충북청주 제01-28-02-18호
○법인(주민)등록번호 : 630617-
○기술능력 : 1인
○등록일자 : 2001년11월23일

⊙부여군공고제2001-286호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부 여 군 수

1. 건 명 : 국토이용계획변경(부여종합체육시설 입지)
2. 주요내용

가. 위 치 :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70-1번지외 63필지

나. 면 적 : 132,519㎡(0.132㎢)

다. 변경용도지역

· 당 초 : 준농림지역 132,519㎡(0.132㎢)

· 변 경 :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132,519㎡(0.132㎢)

라. 행정예고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마. 변경사유 : 부여군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군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

-생활체육공간 확충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건전한 여가공간 마련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 확보

-전국단위 문화 및 체육교류의 장으로 활용

바. 변경도면 : 부여군청 건설과(☎ 830-2481), 문화관광과(☎ 830-2254)에 비치

3. 의견제출 : 본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2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김제시공고제2001-360호

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확대)사용개시공고

김제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김 제 시 장

□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용개시 내용

1. 사용개시년월일 : 2001년11월20일

2. 하수처리구역 : 김제시 일원

-기 존 : 6.4㎢

-확 대 : 16.8㎢

〈관계도면 참조〉 : 김제시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 별항

3. 공공하수도 위치 : 김제, 만경읍, 죽산면, 금구면, 금산면 일원

〈관계도면 참조〉 : 하수처리 계획도

4.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별항

5. 하수배제 방식 및 하수관거 정비계획

-동지역 : 합병식(분류식 및 합류식)

-읍·면지역 : 분류식

〈관계도면 참조〉 : 하수배제방식 지역현황도, 사업우선순위도

6. 기타사항

○기타 관계도면 및 관련서류 :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김제시청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3-540-3530).

〈관계도면 및 서류〉

○김제시 시설계획평면도

○하수처리 계획도

-김제 하수처리 계획도

-만경 하수처리 계획도

-금산 하수처리 계획도

-금구 하수처리 계획도

-죽산 하수처리 계획도

○하수배제방식 지역현황도

○사업우선순위도

○김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의 면적(2016년 기준)

구분 (동, 읍, 면)	배수구역 지역	배수구역 면적(㎢)	처리분구	처리구역 지역	처리구역 면적(㎢)	처리년도	처리장
계		42.16	15	김제시 일원	16.78		
김제	요촌 요촌동 일원	32.5	요 천	요촌동 일원	5.67	(현재 2006년)	김 제

구분 (동, 읍, 면)	배수구역 지역	배수구역 면적(㎢)	처리구역 처리분구	처리구역 지역	처리구역 면적(㎢)	처리구역 처리년도	처리구역 처리장
	서흥 요촌, 검산동 일원		서 흥	요촌, 검산동 일원	1.82		
	검산 검산동 일원		검 산	검산동 일원	3.48		
	공단 검산동 일원		공 단	검산동 일원	1.82		
만경	몽산 몽산리 일원	1.43	몽 산	몽산리 일원	0.42	(2006년)	만 경
	갈전 갈전리 일원(진봉면)		갈 전	갈전리 일원	0.70		
	만경 만경리 일원		만 경	만경리 일원	0.79		
죽산	오봉	0.55	오 봉		0.04	(2006년)	죽 산
	옥성		옥 성		0.09		
	죽산		죽 산		0.33		
금구	신기	6.47	신 기		0.30	(2006년)	금 구
	금구		금 구		0.43		
금산	성계	1.19	성 계		0.37	(2006년)	금 산
	쌍용		쌍 용		0.40		
	원평		원 평		0.12		

□처리구역 분구별 면적

처리구역 분구			기존(당초) 주거	상업	공업	기타	계	확대(2016년기준) 주거	상업	공업	기타	계
김제	요촌	11	33.9	4.6			38.5	28.4	4.6			33.3
		12	69.5	53.5			123.0	69.5	53.5			123.0
		13	21.8	29.8			51.6	21.8	29.8			51.6
		14	58.7	3.2			61.9	70.7	3.2			73.9
		15	81.1	11.3			92.4	100.0	11.3	4.9		116.2
		16	161.2				161.2	141.9	13.1	(14.5)		155(14.5)
	서흥	21	58.5				58.5	69.6				69.6
		22	100.0				100.0	45.5				45.5
		23	44.5				44.5	20.3				20.3
		24			30.1		30.1			28.8		28.8
		25	14.5				14.5	17.5				17.5
	검산	31	54.3				54.3	94.7				94.7
		32	75.6	10.0			85.6	75.1	10.0			85.1
		33	34.5	20.7			55.2	34.5	20.7			55.2
		34	76.7				76.7	112.5				112.5
	공단	41			128.5		128.5				53.3	53.5
		42			128.5		128.5			128.5		128.5
	계		884.8	133.1	287.1		1,305	902.3	146.2	176.7	53.3	1,278.5
만경	몽 산						31.7	14.6		21.5	5.7	41.8
	갈 전						-	68.2	2.1			70.3
	만 경						79.1	62.3	16.8			79.1
	계						110.8	145.1	18.9	21.5	5.7	191.2
죽산	오 봉						3.8	3.8	-	-		3.8
	옥 성						8.7	8.7	0.4	-		9.1
	죽 산						26.9	26.7	6.3	-		33.0
	계						39.4	39.2	6.7	-		45.9
금구	신 기						29.6	25.4	4.2	-		29.6
	금 구						38.8	36.8	6.5	-		43.3
	계						68.4	62.2	10.7	-		72.9
금산	성 계						35.8	24.0	1.3	11.8		37.1
	쌍 용						22.0	37.4	2.1			39.5
	원 평						8.9	4.4	7.9			12.3
	계						66.7	65.8	11.3	-		88.9
총 계			884.8	133.1	287.1		1,305.0	1,214.6	193.8	210.0		1,677.4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2016년 기준)

하수처리장	항목	설계유입수질(mg/ℓ) 기존	설계유입수질(mg/ℓ) 확대	설계용량(톤/일) 기존	설계용량(톤/일) 확대
김제	BOD	160	123	20,000	36,000
	COD	140	125		
	SS	175	126		
	T-N	-	29.6		
	T-P	-	4.36		
만경	BOD	-	172	-	4,000
	COD	-	175		
	SS	-	181		
	T-N	-	32.5		
	T-P	-	5.67		
죽산	BOD	-	176	-	600
	COD	-	179		
	SS	-	187		
	T-N	-	30.0		
	T-P	-	5.45		
금구	BOD	-	176	-	2,000
	COD	-	179		
	SS	-	187		
	T-N	-	30.0		
	T-P	-	5.45		
금산	BOD	-	172	-	2,100
	COD	-	175		
	SS	-	182		
	T-N	-	32.4		
	T-P	-	5.66		

⊙고창군공고제2001-270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건설업 자진반납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자진반납수리)하고 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8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고 창 군 수

○상 호 : (유)진훈건설

○주민(법인)등록번호 : 214614-0001009

○대표자 : 최상진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36-5

○업종 및 등록번호

-포장공사업 전북고창 99-16-05

○처분내용 : 등록말소

○사 유 : 자진반납

○처분일 : 2001년11월22일

⊙구미시공고제2001-492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전문건설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취소처분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구 미 시 장

○취소일자 : 2001년11월22일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유
기계설비공사업 (경북 97-12-25)	대구정비	김창희	구미시 송정동 80-5	자진반납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경북구미 2001-27-2-13)	(주)에스넷	남찬모	구미시 형곡동 182-5	〃

⊙군위군공고제2001-172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전문건설업등록 신청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군 위 군 수

○업종 및 등록번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군위 2001-10-15

○상 호 : (주)양양건설

○대표자 : 이상연

○소재지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213-23
○등록일자 : 2001년11월23일
○법인(주민)등록번호 : 174311-0001597

⊙진주시공고제2001-675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진 주 시 장

○업종 및 등록번호
-창호공사업 진주시 2001-08-06
-철물공사업 진주시 2001-11-11
○등록년월일 : 2001년11월20일
○상 호 : 수양창호공사
○대표자 : 최두환
○영업소소재지 : 진주시 신안동 723-8
○주민(법인)등록번호 : 591015-

⊙합천군공고제2001-432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합 천 군 수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합천 2001-27(2)-02
○등록년월일 : 2001년11월22일
○상 호 : 묘산가스
○대표자 : 이정호
○영업소재지 : 경남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134
○법인(주민)등록번호 : 650616-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1-23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구로소방서장

○등록번호 : 서울구로 제2001-3호
○업종(등급및분야) : 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 · 전기)
○상 호 : 우성E · N · G
○대표자 : 이순호
○소재지 : 구로구 구로동 104-10
동남오피스텔 1107호
○등록일자 : 2001년11월23일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1-3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서초소방서장

○등록번호 : 제서울서초 2001-15호
○업종(분야)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상 호 : 주식회사 삼강이엔씨
○법인등록번호 : 110111-2347741
○대표자 : 조용진
○영업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5
○등록일자 : 2001년11월22일

⊙경기도구리소방서공고제2001-9호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7일

구리소방서장

○업체명 : (주)가나전기
○영업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740-3
○대표자 : 정성옥
○등록종류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번호 : 경기구리 제2001-6호
○자본금 : 56,400,466원
○등록일자 : 2001년11월19일
○비 고 : 신규

인 사

⊙2001년11월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조사2국장

부 이 사 관 하 동 원(河 東 源)

이사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지역진흥과장

시설서기관 방 기 성(方 基 成)

시설부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실지조사 출석통지

광업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고자 다음의 광업권설정 출원인에게 출석하실 것을 광업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시어 출장공무원에게 현장을 안내하시고 조사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출원이 각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01년11월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지적 : 함창 111

○광종명 : 금·은

○출원인 : 이성걸

○출석일시 : 2001년12월11일 10 : 00

○출석장소 :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주 소 : 서울 광진구 화양동 202(1/7)

광업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광업권자는 다음의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시어 출장공무원에게 현장을 안내하시고 조사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을 알려드립니다.

2001년11월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 70402

○광업권자 : 전방무

○출석일시 : 2001년12월11일 10 : 00

○출석장소 :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00

○출원지적 및 광종 : 군위 12 고령토

○결 정

2001 느단 62 청구인 서원자

본 적 사천시 봉남동 402

주 소 창원시 남양동 20 성원1차아파트 101동 502호

사건본인 (부재자) 강 병 도

1947년 1 월25일생

본 적 사천시 봉남동 402

최후주소 창원시 안민동 48

주 문

이 법원 2001느단62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01년11월 9 일 심판한 주문중 사건본인 “강영철”을 “강병도”로 경정한다.

이 유

위 심판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11월19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오경미

○공 시 최 고

다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사건본인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다음 사건본인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2001 느단 269 청구인 윤순금(尹順金)

본 적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390

주 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370

사건본인(부재자) 문 광 용(文 光 勇)

1943년11월 1 일생

본 적 김포시 북변동 323의 1

최후주소 김포시 북변동 323의 1

○공시최고 기일 2001년 5 월31일

2001년11월19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사 양범석

2001 느단 228 청구인 한기홍

본 적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554

주 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65의 1 성우아파트 다동 108호

사건본인(부재자) 허 계 순

1920년 7 월17일생

본 적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554

최후주소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554

○공시최고 기일 2002년 5 월18일

2001년11월19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사 이재근

○심 판

2001 느단 115 금치산선고

청 구 인 박효정(朴效貞)

본 적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10

주 소 김포시 북변동 268의 19 남향빌라 다동 201호

〃 박윤정(朴允貞)

본 적 인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1195

주 소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121의 2

사건본인 박 시 걸(朴 時 傑)

1942년 2 월 8 일생

본 적 김포시 북변동 산3

최후주소 김포시 감정동 448의 8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사건본인 박시걸을 금치산자로 한다.

2001년10월26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사 양범석

2001 느단 27 청구인 주용덕(朱容德)

본 적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16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50의 1 삼보아파트 103동 904호

사건본인(부재자) 이 순 열(李 順 烈)

1936년 6 월 9 일생

본 적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16

최후주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16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67년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62년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67년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11월20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사 안승국

2001 느단 126 청구인 진일선

본 적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260의 13

주 소 진주시 이현동 107의 12

사건본인(부재자) 진 부 남

1941년 1 월 8 일생

본 적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260의 13

최후주소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260의 13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61년10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56년10월경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961년10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11월17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김진석

2001 느단 127 청구인 진일선

본 적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260의 13

주 소 진주시 이현동 107의 12

사건본인(부재자) 진 갑 수

1930년 9 월 5 일생

본 적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260의 13

최후주소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260의 13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75년 5 월31일경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70년 5 월경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975년 5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11월17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김진석

○공 고

99 회 7 회사정리

정리회사 서구산업주식회사

안산시 신길동 1061

관 리 인 박노하

이 법원은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2001년11월20일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의 요지를 공고함.

다 음

1. 주 문 : 정리회사 서구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 위 정리회사는 정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으며, 최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애초 정리계획에서 예상한 바를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2001년11월20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이 호 원

판 사 최 광 휴

판 사 송 봉 준

○(주)모나리자관계인집회기일공고

98 파 5273 회사정리

정리회사 주식회사 모나리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0의 4

관 리 인 박화삼

위 정리회사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및 장소를 2001년11월28일 15 : 00 서울지방법원 제466호 민사법정으로 정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167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01년11월17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 사 변 동 걸

판 사 손 지 호

판 사 윤 강 열

○파산선고및파산폐지결정공고

2001 하 34 파산선고

신청인겸 채무자 손 경 란

1978년 6 월19일생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6의 9

(10/2)

본 적 제주시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089

1. 결정년월일시 : 2001년11월19일 16 : 00
2. 주 문 :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001년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이 윤 승

판 사 이 규 홍

판 사 임 성 철

○채권조사의특별기일공고

98 하 14 파 산

파 산 자 주식회사 충청은행

대전 중구 오류동 176의 1

파산관재인 김형배, 정송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한다.

다 음

1. 기 일 : 2001년12월21일 15 : 00
2. 장 소 : 대전지방법원 제304호 법정
3. 목 적 : 2000년10월20일자 특별기일 이후 추가신고된 파산채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

2001년11월14일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 사 박 해 성

판 사 문 정 일

판 사 오 민 석

○채권조사의특별기일및채권자집회소집공고

99 하 17 파 산

파 산 자 주식회사 충남상호신용금고

대전 서구 탄방동 81의 12 국일빌딩 5층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조사를 위한 특별기일 및 제2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한다.

다 음

1. 기 일 : 2001년12월21일 15 : 00
2. 장 소 : 대전지방법원 제304호 법정
3. 목 적

①1999년 8 월20일자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가신고된 파산채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

②파산관재인 김태범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의 승인 및 감사위원의 설치 여부에 관한 결의를 위한 제2회 채권자집회

2001년11월15일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 사 박 해 성

판 사 문 정 일

판 사 오 민 석

2000 하 12 파 산

파 산 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

대전 서구 탄방동 81의 12 국일빌딩 5층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조사를 위한 특별기일 및 제2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한다.

다 음

1. 기 일 : 2001년12월21일 15 : 00
2. 장 소 : 대전지방법원 제304호 법정
3. 목 적

①2001년 6 월 8 일자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가신고된 파산채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

②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의 승인 및 감사위원의 설치 여부에 관한 결의를 위한 제2회 채권자집회

2001년11월15일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 사 박 해 성

판 사 문 정 일

판 사 오 민 석

○동우종합건설주식회사화의인가공고

2001 거 1 · 2 화의개시 및 보전처분

신청인겸 채무자 동우종합건설주식회사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135

대표이사 최정원

다음 화의조건에 기한 이 사건 화의는 2001년11월19일 15 : 00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었고, 화의법 제55조가 정한 불인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01년11월19일 이를 인가하

였으므로, 화의법 제56조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화의조건의 요지◇

1. 용어의 정의 : 이 화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발생이자라 함은 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말한다.
 나. 장래발생이자라 함은 화의개시결정일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기일까지의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과 종합금융사, 금고, 리스회사, 할부금융사, 보증보험사, 파이낸스사, 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을 말한다.
 라. 약정이율에는 연체이율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변동금리를 적용한 채권은 약정이율이 없는 채권으로 본다.
 마. 다음 각 항에서 변제일이 정하여지지 않는 기발생이자 및 2001년 장래발생이자에 대한 변제일은 2002년 6 월30일로 하고 그 후의 장래발생이자에 대한 변제일은 당해년도 12월31일로 한다.
 바. 원금 및 이자의 변제일이 공휴일이면 그 후 최초영업일로 한다.
2. 금융기관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 원금을 2004년 7 월 1 일부터 2011년 6 월30일 7년간 균분하여 매년 12월31일 상환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를 면제받는다.
3.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 채권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 원금을 2004년 7 월 1 일부터 2011년 6 월30일까지 7년간 균분하여 매년 12월31일 상환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연 8%로 하여 당해년도에 변제한다(단, 약정이율이 있는 연 8% 이하일때는 이율을 약정이율로 한다).
4.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채권자중 담보권행사를 포기하고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변제조치 : 원금을 2004년 7 월 1 일부터 2011년 6 월30일까지 7년간 균분하여 매년 12월31일 상환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연 10%로 하여 당해년도에 변제한다(단, 약정이율이 연 10% 이하일 때는 이율을 약정이율로 한다).
5. 화의채권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지급이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한다.

2001년11월19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 사 김 관 재

판 사 김 성 주

판 사 양 영 희

○파산선고공고

2001 하 16 파산선고

신 청 인 한미캐피탈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의 1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7의 20 아태빌딩 11층

대표이사 정홍진

대리인 변호사 표성수,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조정래, 오기형

채 무 자 전은리스주식회사

익산시 동산동 1054의 6

대표이사 황보용남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방 현, 이은재, 오창석, 박광오, 양진욱

이 법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2001년11월16일 10 : 0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주 문

1. 채무자 전은리스 주식회사를 파산자로 한다.
2. 변호사 문현주(文泫柱,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33의 6 백제빌딩 2층, 3층)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을 2001년12월13일까지로, 채권신고장소를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 신청계로 각 정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01년12월27일 14 : 00 전주지방법원 제4호 법정으로 한다.

※파산자의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또는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나 그 재산을 소지하는 자는 그 뜻, 만약 재산을 소지하는 자가 별제권을

가지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진 뜻을 2001년12월 13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16일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 판 사 방 극 성

판 사 남 준 희

판 사 박 용 우

○포항중앙신용협동조합파산선고공고

2001 하 56 파산선고

채 무 자 포항중앙신용협동조합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5의 4

관 리 인 김충명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1년11월13일 10 : 0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파산법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포항중앙신용협동조합을 파산자로 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예금보험공사(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중구 다동 33, 대표자 : 사장 이상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기일

①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 2001년11월30일까지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분실

②채권자집회 · 채권조사기일 및 장소 : 2001년12월12일 10 : 00 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

5. 유의사항

파산자의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01년11월30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1년11월13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장 윤 기

판 사 최 월 영

판 사 김 태 현

○조동현채권자집회소집공고

2001 하 19 파산선고

파 산 자 조동현

마산시 대외동 7 신동아빌라 비이동 201호

파산법 제325조, 제158조, 제160조, 제16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 2001년12월12일 16 : 00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대법정

2. 집회의 목적사항

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나.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

2001년11월15일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 사 박 기 동

판 사 남 양 우

판 사 이 언 학

○우성금속주식회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

2001 하 20 파산선고

파 산 자 우성금속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40의 2

파산법 제325조, 제158조, 제160조, 제16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 2001년12월12일 16 : 00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대법정

2. 집회의 목적사항

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나.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

2001년11월15일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 사 박 기 동

판 사 남 양 우

판 사 이 언 학

○배 당 공 고

99 하 16 파 산

파 산 자 (주)우양상호신용금고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은 제2회 배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우선권 있는 채권 : 금0원정

○일반채권 : 금228,025,136,722원정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우선권 있는 채권 : 금0원정(0%)

○일반채권 : 금1,150,000,000원정(0.5043%)

2001년11월16일

파산자 주식회사우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상용의 대리인 문성수
파산관재인 문재인

99 하 26 파 산

파 산 자 (주)아주상호신용금고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은 제2회 배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우선권 있는 채권 : 금0원정

○일반채권 : 금152,655,213,852원정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우선권 있는 채권 : 금0원정(0%)

○일반채권 : 금1,831,862,564원정(1.2%)

2001년11월16일

파산자 주식회사아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상용의 대리인 문성수
파산관재인 문재인

2000 하 9 파 산

파 산 자 주식회사 영천상호신용금고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은 제1회 배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채권의 종류 : 일반채권

○채권의 금액 : 금43,753,773,701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14,228,377,172원

2001년11월27일

파산자 주식회사영천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